

세계인권선언 56주년 기념

## 학생인권 대토론회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부산교육개혁연대

| 세계인권선언 56주년 기념 |

# 학생인권 대토론회

학생의 인권 현실과 보호를 위한 사회적 장치 모색

| 일 시 : 2004년 12월 7일(화) 18:00

| 장 소 : 부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 강당

주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부산교육개혁연대

후원 부산광역시 교육청 / 부산인권센터  
국제신문사 / 한겨레신문사

| 세계인권선언 56주년 기념 |

# 학생인권 대토론회

학생의 인권 현실과 보호를 위한 사회적 장치 모색

| 일 시 : 2004년 12월 7일(화) 18:00

| 장 소 : 부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 강당

주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부산교육개혁연대

후원 부산광역시 교육청 / 부산 인권 센터  
국 제 신 문 사 / 한겨레신문사

## 목 차

학생의 '삶'과 인권 : 현실과 개선조건 (이 수 광 동양대학교 교수)	5
소중한 출발 –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추진 (박 영 관 부산광역시 교육위원)	35
학생 인권 신장을 위한 여러 가지 모색 (강 명숙 국가인권위원회)	65
학생의 인권존중은 희망을 나누어 갖는 첫걸음이다 (이 미식 부산교육대학교 교수)	75
너무나 당연한 그러나 먼, 우리의 인권 (최 아름 사직여자고등학교 학생)	83
부산광역시 학생 인권조례제정에 대한 학부모 바람 (이 금숙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부산지부)	91

## 자료

1. 부산지역 중·고등학교 학생생활관계규정(학생회칙·선도규정·용의복장규정) 실태조사 분석 97
2. 부산지역 학생 인권 의식 (학생·학부모·교사) 조사 분석 114

## 부록

1. 일본 가와사키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례 159
2. 쉽게 풀어 쓴 세계인권선언 171
3.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 176
4. 아동인권관련 법규 181
5. 교육부 학교생활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218

주제 발제 1

## 학생의 '쉼' 과 인권 : 현실과 개선조건

이 수 광 (동양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 몰 인권적 학교풍경 – ‘꿈’을 대신 꾸주는 학교

### [사례 1] 교사 3명이 학생 1명 ‘집단체벌’

서울시내 모 실업계 고등학교 교사 3명이 학생 1명에게 ‘집단체벌’을 가한 것으로 알려져 서울시교육청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이 학교 교사 3명은 지난 1일 점심시간 때 학교 밖에서 흡연한 후 들어오는 학생을 적발해 체벌한 후 교내지침에 따라 두발을 깎으려 했으나 이에 반발하자 뺨을 때리는 등 집단체벌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의 학부모는 관내 경찰서에 이들 교사 3명을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담임교사는 “이 학생은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 일을 돋는데, 두발이 짧으면 손님들에게 혐오감을 준다’며 직접 깎겠다는 의사 를 표시했다고 하는데, 교사들이 이를 ‘반항’으로 받아들이면서 사건이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2004.7.5

### [사례 2] “속옷 색깔까지 제한하는 학생생활규정”

국회 교육위의 12일 충남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구논회(열린우리당) 의원은 “전국 상당수 학교가 학생생활 규정에 과거 군사 독재 시절이나 어울릴 듯한 조항을 그대로 유지해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며 개정을 촉구했다. 구 의원은 전국 165개 학교의 학생생활규정 사본을 분석한 학생생활 규정을 통해 본 학생 인권의 현 주소’ 자료집에서 머리카락 길이 등을 규제하는 학교가 85.16%, 장신구를 규제하는 학교가 54.84%이었으며 신발이나 가방을 규제하는 학교도 각각 69.98%와 37.42%에 달했다고 밝혔다. 규정에는 신발 값 1만원 이내, 가방은 캐릭터가 있거나 요란한 색깔 금지, 머리 형태는 남학생은 가르마를 타는 것을 금지하고 여학생은 단발머리는 어깨를 덮지 않아야 하고 긴 머리는 가운데로 묶되 18cm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도 있었다. 특히 일부 학교는 속옷 색깔을 ‘흰색이나 분홍색’으로 제한하는 등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까지 통제하고 있으며 학생회칙 제·개정 권한이 학교에 있거나 권한이 아예 없는 학교도 49.49%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한겨레신문 2004.10.12

### [사례 3] 체벌로 머리 깎자 학생 100여명 삭발 등교

고교 체육교사가 자신의 통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 100여명의 머리를 강제로 깎아 물의를 빚고 있다. 6일 부산 고교 학부모와 학생들에 따르면 지난 1일 이 학교 체육교사 2명이 체력장 연습 중 수업이 끝나기 전에 학생들이 교사 허락 없이 교실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2학년 3개반 100여명의 머리를 부분적으로 짧게 깎았다. 교사들은 교실로 들어간 학생들을 모두 운동장으로 불러내 무릎을 꿇게 한 뒤 교내 이발소에서 가져온 이발기구로 머리 앞부분과 옆부분을 짧게 깎았다. 교사들은 3학년 일부 학생들의 머리를 자르려다 학생들이 반발하자 체벌로 대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향 2004.10.6

## 몰 인권적 학교풍경 – ‘꿈’을 대신 꿔주는 학교

### [사례 4] 예배선택권 요구 단식

예배선택권을 요구하던 강의석군 14일만에 단식을 풀다.

### [사례 5] 성적부진 비관 자살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른 뒤 성적 부진을 고민하던 고3 수험생이 시험을 치른 지 이틀 만에 한강에 투신해 주검으로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군의 평소 성적은 중하위권이었고,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할까봐 걱정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04.11.27 한겨레신문.

### [사례 6] 전국 고3들아 수능 잘 보라 – “12년 옥살이 출감 30일전”

얼마 전 친구들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여러 개 받았다. 거의 똑같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죄로 12년 간 감옥살이를 하다가 석방을 30일 앞두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수능이 30일 앞으로 다가왔고, 수능만 보고 나면 자유의 몸이 된다는 뜻이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생활, 뒤틀리게까지 이어지는 야간자율학습, 제자리걸음만 하는 모의고사 점수…, 다들 몸과 마음이 지치고도 남는다. 이제 한달 만 있으면 이런 생활을 청산하게 된다. …

김보경/경북 모여자고등학교 3학년/ 한겨레신문 2004.10.26

## I. 서론

인권은 인간됨의 옹호와 신장을 목표로 자유와 평등을 지향하는 이념을 본질로 한다. 따라서 인권논의는 속성상 특정 지배 권력이나 그 지배 권력에 의해 형성된 지배구조에 관심을 갖기 마련이다. 최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점증되고, 나아가 일상적 생활공간에서의 인권운동이 대중화되고 있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sup>1)</sup> 이와 같은 인권담론의 확장 및 일상적 인권운동의 대중화는 학생인권 논의의 배경 문맥이 된다.

1) 사회적 약자란, 정체성의 차이로 인해 구조적으로 차별 당하는 집단이란 볼 수 있다. 이 같은 개념 정의 방식으로 보면, 왜 ‘학생’들이 ‘사회적 약자’의 범주에 포함되는가가 선명해 진다. 즉, 한국 사회에서는 학생들에게, 여타의 신분보다는 ‘학생’이란 정체성이 강하게 강조되고 있다는 점, 이로 인해 표준화된 일상적 삶이 요구되는 성향이 강하다는 점등이 이의 근거가 된다.

교육이란 본래 학습자에게 사회적 삶을 영위하는데 요구되는 다양한 규범, 관습, 지식 등을 가르치고, 한편으로는 학습자의 무한한 잠재능력을 발현할 수 있도록 돋는 작용이다. 이런 작용을 통해, 한 개인은 사회적 존재로 성장하고, 각자의 인격을 형성하게 된다. 교육활동이 전개되는 공간이나 실제 교육장면에서 학습자(학생)가 ‘보호’되고, 적극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한국 교육현실의 실제 모습은, 이 같은 주장을 단지 이론적 차원에서만 생명력을 얻고 있을 뿐이다. 현실적으로 교육제도나 교육정책, 단위학교의 행정제도, 나아가 실제 수업장면에서 조차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존중’되고, 그들의 ‘인간됨’이 옹호되고 있다는 단서를 확인하기란 쉽지 않다. 좀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실제 학교환경에서 다수 학생들은 수동적인 대상으로 전락되고, 주체성이나 자율성을 발현할 기회는 제한되거나 차단되고, 학생들이 동의한 바 없는 강박한 의무목록(義務目錄)이나 강압적 규율이 정도 이상으로 강조된다.

이런 환경에서 학생들은 무인격감(無人格感)이나 무력감(無力感)을 느끼게 되고, 나아가 관행과 제도에 순응하는 자유양식과 태도를 갖게 된다. 이 같은 교육부문의 반인권적 환경은 학생 개개인의 일상적 삶은 물론 학생-교사, 학교당국-학부모간의 관계성마저 왜곡시키고, 학교를 단지 ‘교감이 사라진 한시적 체류 공간’으로 변모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최근 일부 인권 관련 시민운동 단체가 지속적으로 학생인권 문제와 관련한 각종 사례를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교육계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교육부문의 반인권성 대한 사회일반의 우려섞인 시각을 보여주는 예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생인권 현실을 적확하게 진단하고, 현실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교육관련자의 책무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 같은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현 단계에서 학생들의 삶이 어떤 특징을 갖는지 확인하고, 학생인권 영역 중 사회적 지위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는가를 살펴한다. 또한 현실 학생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조건과 과제를 제시한다.

## II. 학생 ‘삶’의 특징: 순종과 순종 강화체제

학교공간에서의 학생 생활은 ‘정상적인 삶’이라기보다는 ‘비정상적인 삶’의 성격을 강하게 띤다. 이 같은 주장은 ‘학교 삶’을 살아가는 학생들이 학교공간에서 의미 있는 삶을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환원될 수 있다. 학생 자신들뿐만 아니라 많은 교육관련자들 조차도 학생들이 학교생활 속에서 심각한 갈등과 모순을 경험한다고 진단한다. 이는 학생들이 학교 공간에서 부분적이든 전면적이든 '구속된 삶', '기계화되고 유보된, 그러나 방치된 삶', '교육으로부터 소외된 삶', '행복하지 못한 삶', '불균형적이고 순응적인 삶', '이중적이고 모순된 삶', '삶의 질이 빈약한 삶'을 살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폭넓은 공감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비록 학생들이 의미 있는 '학교 삶'을 향유하고 있는 것으로 여긴다 해도, 그것은 '교육구조'나 '학교문화'에 의한 '제도화된 사고'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면에서 볼 때, 학생들의 '학교 삶'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진단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학생들의 '학교 삶'을 인권개념에 비추어 보면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우선, 학생들은 학교 공간에서 사회심리적 지불연기(psychosocial moratorium) 혜택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를테면, 학교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사고하고, 실험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회적 자유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일 예로 학생의 권리제한의 가장 일반적 논리는 학생이 미성숙자라는 점에 주로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논리는 권리의 제한 및 유예의 정당화 논리로 읽힐 뿐 학생들이 사회심리적 지불 연기의 대상으로 인식되기 위한 논리로는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미성숙한 학생'들에 대한 학교당국이나 교사들의 과도한 '간섭'이나 '제재'는 당연하게 취급되지만, 학생들의 실험정신이나 모험 혹은 새로운 시도, 심지어 개인적인 실수에 대해서조차 극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는 설정이다. 결국, 학생들에 대한 사회심리적 지불연기 혜택의 철회는 학생의 각종 권리 행사의 제한을 정당화하고, 나아가 권리 침해를 정당화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학생들은 규격화된 삶의 양식을 요구받고 있다. 그동안의 학교운영 방식을 보면, 하나님의 가치(즉, 공부 혹은 점수)를 위해 많은 다른 유의미한 가치들을 희생시켜온 경향이 있다. 이 같은 편향적인 학교운영 방식으로 인해 학생들은 표준화된 생활양식, 즉 학교가 정한 획일적 기준에 적합한 생활 태도를 요구받는 것이다.<sup>2)</sup> 예컨대, 학생들에게는 집단적 통일의 원리가 더 강조된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자율성, 창조성, 다양성의 가치보다는 '학생다운 행동'의 가치가 우선하고, 따라서 학생들에게는 학교의 제 규정에 충실

2) 특히, 성적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가장 중심적인 가치로 작용하고 있어서 성적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노력을 애워싼 잠재적 교육과정이 막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혹은 선생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부정직과 요령이 학생들 사이에서 용인되고 학부모들도 용인하며, 심지어 선생님들조차도 용인하게 된다(문용린, "교육개혁과 신뢰사회 형성",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1주년 개원기념 '신뢰사회와 21세기 한국' 세미나, 1999.6.30, p.7-8).

할 것이 요구된다. 이 같은 표준화된 삶의 양식은 학생들에게 교과지도는 물론 생활지도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강제된다. 반복적 강제의 결과, 결국에 학생들은 표준화된 삶의 양식에 대해 '동일시하는 습관'을 갖게 되는 것이다.

동일시란 바로 감시하는 시선, 어디선가 보고 있는 듯한 시선과 자신의 시선을 동일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조건'처럼 처음부터 주어지는 작용이 아니라, 반대로 사람들이 '주위'를 의식하게 되면서, 그리고 '주위'의 눈총을 염두에 두는 습속이 만들어지면서, 그리하여 그로부터 벗어나면 어떤 비난과 처벌이 쏟아질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를 피하기 위해서 좋은 삶을 감수해야만 하는 조건으로 강제되는 조건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자신의 시선이고 자신의 선택이라는 착각과 오인으로 인해 '동일시'로 간주되는 조건이다.<sup>3)</sup>

이 같은 학생들의 '동일시'는 자신들에 대한 통제장치를 당연시하거나 '학교공부'를 위해서는 여타의 활동에 대한 제재를 필요한 조치로 받아들인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공부'(특히, 입시공부)이외의 활동에 대해 불필요하다는 인식까지도 낳고 있다. 또한 '동일시'로 인한 학생들의 '제도적 사고'는 동질성의 복제로 이어져, 학생들 스스로 타인의 '개성'이나 '다름'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배타성을 낳고 있는 것이다.

셋째, 학생들은 '힘에 의해 지배되는 삶'을 살고 있다. 학생들의 학교 삶은 '규칙의 지배(rule of law)'보다는 '권위라는 힘에 의한 지배(rule of power)'의 성격이 강하다. 즉, 합리적이고도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통제보다는 권위자의 기분, 감정 혹은 때에 따라 달리 일어나는 심리적 변화에 따른 힘의 통제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교사는 권위적 판단자의 지위를 부여받는다. 또한 교사의 전문적 판단에 근거한 권력 행사는 폭넓은 '교육적 자유재량'으로 인정받는다. 따라서 교사의 권위나 권력 행사는 학교공간에서의 학생 삶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그런데, 권위적 판단자로서 교사가 행사하는 권리, 즉 교수·학습 장면에서의 통제, 생활지도 과정에서의 제재, 일상적인 간섭 등등은 매우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행사되는 경향이 있다. 이를테면, 교사의 권력행사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기보다는 개별 교사의 기분이나 감정 혹은 개인적 확신에 근거하여 행해지는 경향이 강하다. 학생들 입장에서 교사의 권력행사를 불신하거나 거부감을 갖는 이유는 바로 원칙 없는 '권위에 의한 지배'의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특히,

3) 이진경, "근대적 주체와 정체성", 한국산업사회학회,『경제와 사회』 제35호, 서울: 한울, 1997, pp.23-24 ; '동일시하는 습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 Foucault, *Surveiller et Punir*, 오생근 역, 『감시와 처벌』, 서울: 나남, 1994, 제3부 참조.

'권위에 의한 지배'의 경우, 학생들이 규칙을 내면화하기보다는 개별 교사에 따라 각기 다른 '차별적 행동원리'의 적용을 통해 학교생활을 한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넷째, 학생들은 통제체제에 익숙한 '자기검열적 삶'을 살고 있다. 학생들에게 표준화된 삶의 양식이 요구되고, '사람에 의한 통제'가 행사되는 것과 관련하여 학생들 스스로 학교규율과 교사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금기로 하는 자기검열 체제를 갖게 된다. 즉, 훈련된 자기검열 체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학교의 규율을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혹은 교사를 자극하지 않을 범위 내에서 자신들의 생활을 조직하게 된다.

다섯째, 학생들은 순종적인 삶을 살고 있다.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교과지도나 생활지도를 통해 자신의 권위에 순응하도록 지도하고, 이에 학생들은 교사의 권위에 적응하는 기법을 터득한다. 따라서 학생들은 학교당국이나 교사의 지시나 강제를 수용하고 권력행사에 순종적인 태도를 보인다. 특히, 일부의 학생들은 권위자인 교사의 환심 또는 호감을 사기 위한 행동 전략을 쓰거나 교사가 불쾌하게 생각하리라고 예상되는 언어와 행동을 숨기기까지 한다. 따라서 학생들은 적극적인 참여의 원리를 배우기보다는, 외부의 자극에 즉각적인 반응만을 하는 비주체적 삶의 자세를 내면화하게 된다.

그러나 학생들의 학교 삶이 순종적이라고 해서, 그들이 교사나 학교당국의 권위를 합당한 것으로 인식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학생들의 순종은 '형식적 순종'을 뜻한다. 즉, 학생들은 학교내부의 권위주의로 인해 학교생활에서는 형식적으로 순종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교사나 학교당국의 권위 행사를 합당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학생들의 이 같은 태도와 인식의 불일치는 학교안팎에서 상반되게 통용되는 '이중적 행동원리'를 냉고, 나아가 교사나 학교당국 간의 '감추어진 갈등'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학생들의 '제도적 삶'의 특징은 순종강화 체제 속에서의 '순종적 삶'이라고 할 수 있다.

### III. 학생인권 현실

학생인권 영역은 크게, 자유권(기본적인 자유의 권리 포함), 행복권(복지권-신체 보존권 및 최소목적 행위권, 목적증가 행위권 등이 포함), 사회적 지위권으로 분류 가능하다. 그

런데, 학생인권 논의에 있어서 특히 주목해야 할 영역은, '학생'이 재학관계(在學關係)라는 특수한 사회적 조건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지위권'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교육을 받을 권리', '학생들의 교육적 흥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결정(교육과정 편성, 규칙 제정)에 참여할 권리', '학습을 위해 적합한 환경을 가질 권리', '부당하게 대우 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 '적법한 절차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 등과 같은 권리목록들이 '사회적 지위권'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학생들의 사회적 지위권 중 '교육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를 보호받을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적법절차를 보호받을 권리'의 보장정도와 확인해 본다.

#### 1.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법적 규정은, 통상 '차별 없는 기회제공권'이나 '조건정비 요구권'과 같은 한정적 의미로 이해되어 온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논의방식은 '교육받을 권리'를 '교수-학습장면'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까지 만으로 한정하게 된다. 따라서 학생은 이미 교육기회에 접근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란 '교육내용 선택·결정권', '교육내용 요구권', '수업과정에의 참여권', '교육기회 접근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권', '학습과정에서 조력 받을 권리' 등의 확장된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학교현실을 확장된 의미의 '교육받을 권리'에 비추어 보면, 입시대비 수업이나 상위권 학생중심 수업, 보충교재위주 수업, 교사편리위주 수업, 준비가 불충분한 실험·실습 등은 학생의 수업 참여를 제한·규제하고, 학생을 교수·학습 과정에서 대상화(소외적 참여의 강요)한다는 점에서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의 침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강제적인 보충수업, 타율적인 자율학습이나 형식적이고 변칙적인 특별활동·학급활동 운영, 학교 외 행사에의 강제동원, 형식적인 체험학습 등도 '교육기회 접근에 대한 자기결정권', '교육내용 선택, 결정권', '학습과정에서 조력 받을 권리' 등을 간접·제한 받는다는 점에서 '교육받을 권리'의 침해로 볼 수 있다.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의 침해는 교사의 전문적 자질 부족 및 수업장면에서의 과도한 권력행사, 학교당국의 비교육적인 학교운영 시스템, 교육행정기관의 부당한 간섭이나 감독소홀 및 관행 방조에 의해 발생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육기관이 학부모, 지역사회, 기타 사회기관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는 다양한 관련 세력간의 상호 의존관계 속에서 침해되고 있는 것이다.

## 2.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로 통칭되며, 그 일상적 언어관용과는 달리 사상·양심 및 지식·경험 등을 표현하는 모든 개인적·사회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의미한다. 이 같은 법리의 논리적 연장에서 볼 때,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받을 권리’에는 ‘교육활동, 교육정책, 학교운영과 관련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와 ‘사적 관심사 및 이익과 관련된 표현의 자유’가 포함된다. 따라서 학생들은 교육내용, 자치활동, 학생의 복지와 관련된 학교정책 및 학교운영 방안에 대해서 구두나 문서라는 표현수단을 통해서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학생들에게는 개인적인 관심사나 사회적 문제, 혹은 사적 이익과 관련해서도 상징적 표현까지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자유가 허용된다.

그러나 학교 현실을 보면, 수업장면에서 학습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표명 기회는 제한적으로만 허용되고, 수업 운영과 관련된 학생들의 불만 및 이의 개선을 위한 요구 또한 부당하게 취급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또한 학내 인사문제와 관련한 의견표명 기회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학생자치활동과 관련해서는 학급회의의 변칙적 운영, 학교에 대한 건의사항 차단 및 삭제, 학교행사(학교축제) 프로그램에 대한 자의적 간섭 및 제한, 동아리 활동의 제재 사례도 적지 않다. 이는 대부분 학생들에게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특히,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하는 동아리나 친교를 목적으로 하는 결사체에 대해 사전 등록을 의무화하고, 그 등록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것 역시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에 대한 간섭·사후제재, 엑세스(Access)권의 제한 등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학생의 ‘표현의 자유’의 광범위한 침해는, 교사의 학생권리에 대한 이해부족 및 교사 개인의 자질 문제에서 기인한다. 특히, 학생들의 표현행위를 교사 자신에 대한 ‘도전’이나 ‘공격’으로 인식하는 권위주의는 학생들의 표현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학교당국에 의해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즉, 학생참여가 배제되고 있는 비민주적 의사소통망, ‘강제’와 ‘통제’를 특징으로 하는 전근대적인 억압적 학교규율 등에 의한 표현행위 제한이 이에 해당된다. 이 같은 학교당국의 관행화된 제도적 장치는 학교 편리를 우선하는 행정관행과 결합하여 학생의 표현 행위를 제한하는 강력한 통제 수단으로 작용한다.

## 3. 학생의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학생의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는 ‘사생활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포함한다. 따라서 학생들은 사생활과 관련된 비밀 유지 권리 및 개인 사생활의 자유를 방해받지 않을 권리, 나아가 학교나 교사가 수집·보관하고 있는 학생 개인 정보에 대한 자기통제의 권리까지를 보장받게 된다.

그러나 학교현실에서는 학생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 및 미흡한 정보관리체계로 인해 개인 정보의 도용, 공중(公衆)의 오인, 사사(私事)의 공표, 분실, 유출, 변조의 사례가 확인된다. 또한 생활지도 과정에서도 근거 없는 몸수색 및 사물검사, ‘말하고 싶지 않은 사적 사실’에 대한 강요, 대중 앞에서의 인격적 모독, 부정확한 사실에 대한 유포 등의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학생 개인정보의 전산화와 관련해서, ‘사실과 다른’ 편파적인 정보의 기록, 처리 정보의 손상이나 조작·유출, 열람·정정 요구권의 제한 등은 사생활권의 제한 사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학생들은 학교생활을 통해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의 유출, 사적 비밀의 공표, 가정환경이나 신체적 약점의 공개, 원치 않는 사사(私事)의 확인 강요, 사사(私事)의 오인, 인격적인 모독, 자기정보통제권에 대한 제한을 경험한다.

이 같은 학생 사생활권 침해에는 교사, 정보관리자, 학교당국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교사에 의한 학생의 사생활권 침해의 경우를 보면, 학생 개인정보에 대한 과도한 수집, 교육활동과 무관한 정보의 관리·이용, 학생지도 과정에서의 관행적인 몸수색 및 사물 검사, 공개를 원치 않는 사적 사실에 대한 공표, 공중 앞에서의 인격 모독, 전산 처리 출력 자료의 부주의한 관리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정보 관리자의 경우에는, 정보관리 권한을 오용(불법적인 유출·유포)하거나 학생의 ‘자기정보통제권’에 대해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학생 사생활권의 침해 사례에 해당된다. 그리고 전산정보에 대한 보안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타 기관의 요구에 대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학생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학생 사생활권 침해의 책임이 학교당국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4. 학생의 ‘적법절차를 보장받을 권리’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란 개인의 권리를 보호·실현하기 위해 법률체계상의 규칙과 원리를 따라야 하는 일련의 법적 절차로 정의되며, 그 개념은 법 집행 절차의 정당성(절차적 적법절차)은 물론 법 내용의 정당성(실체적 적법절차)까지를

포괄한다. 따라서 학생에게 보호되어야 할 적법절차의 내용에는, 공정한 절차에 의한 통지, 자기변호 및 적절한 방어기회의 부여, 증거제출의 권리, 불복권 행사는 물론 타당한 징계규정을 적용 받을 권리 및 합리적 징계수단에 의해 통제 받을 권리가 포함되게 된다.

그러나 학생들의 면접 자료를 보면, 학생사안에 대한 징계과정에서 통지절차가 무시되거나 청문기회가 제한되고, 불복절차가 허용되지 않거나 심판기구가 편파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경우는 학생들에게 보장된 절차적 적법절차를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또한 학생징계와 관련하여 불합리한 징계규정을 적용하거나 불합리하고 비교육적인 징계수단(감정이 개입된 과도한 체벌, 성적부진을 이유로 행해지는 체벌, 단체체벌, 시범케이스 체벌, 비교육적 도구를 사용한 체벌, 모욕적 징벌, 성적 괴롭힘 등)을 사용하는 사례도 쉽게 확인된다. 이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실체적 적법절차를 침해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학생들이 '적법절차를 보장받을 권리'를 온전하게 보호받지 못하는 데는, 교사, 학교당국, 시·도교육청 및 학교운영위원회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한다. 교사의 경우, 자의적 판단에 따른 불합리한 징계수단 동원 및 타당성이 결여된 징계규정에 근거한 징계권 행사, 교사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학생이익 보호절차의 제한 등이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학교의 입장에서는 절차적 적법절차를 제도화하지 못하거나, 제도적으로 보장되었지만 편법운영으로 학교당국의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정당화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또한 시·도교육청이 타당성 없는 징계지침을 단위학교에 시달하는 경우, 단위학교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육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학교자체 징계규정을 심의·확정하는 경우 등도 간접적으로 학생의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 IV. 학생인권 침해 요인과 개선 조건

### 1. 학생인권 침해 요인

현 단계 학생인권 상황은 한국사회의 발전정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즉, 한국사회 각 부문의 민주화 정도와 학생인권 현실은 일정한 연관을 맺는다. 이를테면, 학교현실에서의 열악한 학생인권 상황은 한국사회의 미흡한 민주화에 일단의 원인이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사회의 취약한 민주화, 즉 '저강도 민주화'<sup>4)</sup>는 사회성원들의 자율적 참여를 제

한하고, 이로 인해 민주주의 발전의 견인축 역할을 하는 사회적 '중간구조'(intermediate structures)<sup>5)</sup>가 확장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곧 시민사회의 '식민화' 현상으로 발전하고, 종속과 복종의 일상화를 공고화하는 구실을 하게 되었다. 이처럼 민주발전이 취약한데는 그럴만한 구조적, 역사적 요인들이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즉, 해방이 곧 국토분단으로 이어지고, 분단이 고착화되는 과정에서 냉전근본주의(冷戰根本主義) 가치와 문화가 주도문화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sup>6)</sup> 냉전근본주의는 흑백논리로 이견자(異見者)를 차별하고 탄압하는 이데올로기, 즉 반공과 안보의 이름으로 자유, 정의, 인권, 평화 등의 가치를 제한·탄압하는 억압기제로 작용하였다. 이 억압기제는 일상생활의 미세한 국면까지 지배하는 규율로써, 사회구성원의 '자발적 복종'을 체화시키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가권력 주체는 물론 각 부문의 하위권력 주체에 대한 사회일반의 대항구조는 미약할 수밖에 없었다. 즉, 각 부문의 권력주체를 견제할 수 있는 사회적 감시망이 형성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사회적 여건은 교육부문에도 그대로 전이되어 권력자(관료, 학교행정가, 교사)의 일방적 권력행사를 습성화하고, 구성원들에게 '군사적 심성'(military mentality)<sup>7)</sup>을 내면화시켜 자유와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이렇듯 한국사회의 '저강도 민주화'는 교육부문의 각종 모순, 특히 열악한 학생인권 상황과 일정한 연관을 맺는다.

또한 한국 사회에 뿐리깊이 내재되어 있는 전통적 봉건의식도 학생인권 침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사회, 혹은 사회구성원의 의식의 내면에는 아직도 봉건주의적 사고방식이 많이 남아 있다.<sup>8)</sup> 예컨대, 반론과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배타적인 권위주의, 학벌과 재산에 따라 새롭게 형성된 계급 질서와 차별을 묵인하려

4) 조희연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저항의 제도정치 내로의 흡수를 위하여 민주주의 정치체제로의 이행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저강도 민주주의'로 규정한다(조희연,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회운동』, 서울: 당대, 1998, p.31.). 이 글에서 쓰이는 '저강도'의 용법은 현 단계 한국사회의 민주화 정도가 실질적인 민주화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는 의미의 표현법이다.

5) 사회적 중간구조(intermediate structures)란 사회적 독립집단이나 자발적 조직을 일컫는다.

6) 한완상, "청년·사회·역사", 『한국청년의 시대적 역할과 과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외) 공동세미나 자료집, 1999.4.23, p.10. 냉전근본주의 문제가 한국사회의 주도문화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한국사회 상당수의 기성세대는 '서해에서 무력충돌이 벌어지면 반드시 동해에서의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의식상의 냉전적인 균형'을 사고의 중심 축으로 하는데서 확인할 수 있다(한완상, "기로에 선 혁명권의 대북정책", 『창작과 비평』 제105호,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9 가을, pp.124-125).

7) 군사적 심성이란 군사적 가치, 즉 집단에 대한 순응과 기율을 강조하는 것이 여타의 민주적 가치보다 우선하는 심리적 경향성을 의미한다(강정인, 『세계화, 정보화 그리고 민주주의』,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8, p.279).

8)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인권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오름, 1997, p.26.

는 태도, 권력지향적인 관존민卑(官尊民卑)의식, 학연·혈연·지연과 같은 연고주의를 지나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태도, 가부장제에 근거한 전통적 수직적 인간관계 규범, 수직적 인간관계 규범에서 연유하는 '가르치는 자'에 대한 폭넓은 관용 경향 등은 모두 봉건주의 의식의 잔재들이다. 이 같은 전통적 의식은 크게 드러나진 않지만 견고해서, 비주류 집단(소수자나 연소자)의 일상적 삶을 소외시키는 '보이지 않는 규율'로 작동해 왔다. 결국 이 같은 의식의 미성숙은 인권에 대한 관심을 제한하는 구실을 해왔고, 이는 순환적 오류를 낳아 인권개념을 정치적·경제적 자유로만 단순화시키는 구실을 해왔다. 이와 같이 '인권개념의 미분화'로 인해 일상적 삶의 영역 속에서 다양한 인간적 권리가 논의되지 못하는 현실 여건은 학생인권의 침해 상황과 무관치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인권 상황의 직접적인 요인은 교육제도 내부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한국의 교육경쟁구조의 문제를 들 수 있다. 한국 교육경쟁 양식은 상징적 학력추구형이며, 업적형 경쟁, 후원형 경쟁의 모습을 띤다. 또한 선발제도상으로는 병목형 교육경쟁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교육경쟁 양식은 이와 같은 규정만으로는 파악되지 않는 독특한 측면이 있다. 이를테면 한국의 교육경쟁은 연합적 경쟁(聯合的競爭) 구조의 성격을 띤다.<sup>9)</sup> 즉,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사회적 경쟁의 과정적 수단으로 교육경쟁에 참여하고, 학교교사나 행정가들 역시 관료적 경쟁의식에 근거하여 교육경쟁을 가속화시키는 상황이다. 결국 교육에 직·간접적으로 관련하고 있는 제 집단들의 행위가 연합하여, 교육경쟁을 확대·팽창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경쟁구조 속에서 학교는 '경쟁의 핵심 장'의 기능을 수행하고, 따라서 '경쟁의 핵심 장'으로서의 학교 내부에는 경쟁주의와 권위주의가 결합하여 중심 축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쟁주의는 경쟁을 중시하는 태도나 그러한 태도에 입각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연합적 경쟁구조 내에서 이 같은 경쟁주의는 강화되고, 나아가 확대 재생산되게 된다. 그런데 경쟁행위는 배타성을 띠는 만큼, 협동관계를 저해하고, '점수'나 '성적'의 가치가 공공선의 가치보다 우선하는 경향을 띠게 된다. 이는 곧 다수의 학교가 '성적향상'과 '상급학교 진학'을 절대 과제화하고, 학교구성원에게 과제 실현에 적합한 행동전략을 구사하도록 강제하는 것과 무관치 않다. 결국 경쟁주의는 학교구성원의 학교 삶을 획일적으로 유도하고, 이는 구성원 각자의 자율성이나 다양성·독특성의 억제로 연결된다. 이 같은 학교분위기에서 위계관계의 하위에 놓여있는 학생들에게는 권리 보장의 기회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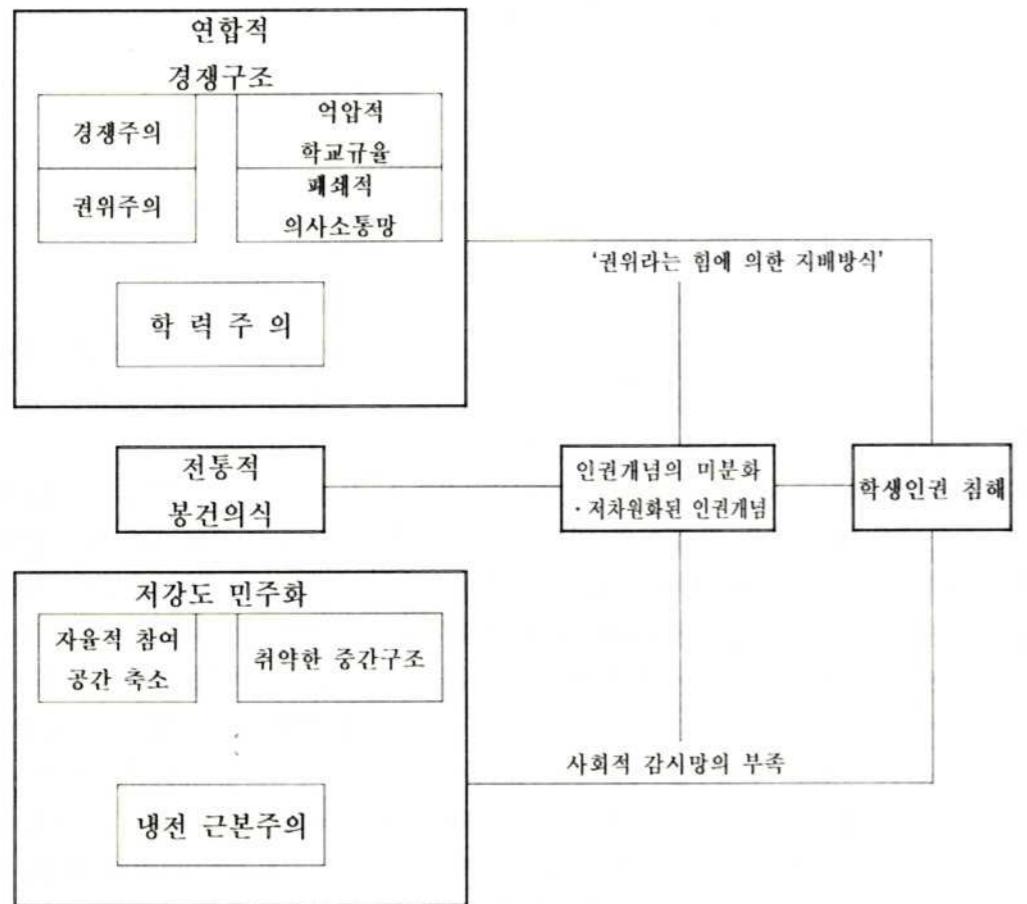
9) 이종각, "연합적 경쟁구조와 학생 삶의 구속 논리", 안범희(편)『교육민주화: 발전적 시론』, 춘천 : 강원대학교 출판부, pp.246-249.

경쟁주의를 효과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한 또 다른 한 축의 행위양식이 바로 권위주의이다. 권위주의는 '권위에 의존하는 강제와 복종'의 태도 및 행위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권위주의는 사람들 사이의 자유와 평등을 크게 제한한다. 권위주의적 사고와 인간관계는 권위를 지닌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특권적 지위를 부여하지만, 권위를 가지지 못하거나 적게 소지한 사람에게는 그만큼의 부자유와 불평등으로 작용한다. 그런데, 제도교육과 관련한 주요 행위주체들의 태도에 이와 같은 권위주의가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만큼, 교사의 절대적 권위가 인정되고, 개인 인권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보다는 학교 공동체적 도덕성이 우선시되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sup>10)</sup> 따라서 교사의 지도 및 학교규율에 대한 학생들의 이의제기는 허용적이지 못하다. 이 같은 학교풍토에서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포기, 유보하도록 강제되는 것이다.

이들 경쟁주의와 권위주의는 상보적으로 서로의 존속을 가능케 하는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학생다운 학생'이란 기준이나 '입시논리'는 이를 강제하기 위한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학교규율이나 폐쇄적 의사소통망에 의해 제시·유지되는 것이다. 특히, 경쟁주의와 권위주의는 학교교육에 대한 개인 이력(學歷)을 사회적 지위상승의 도구로 인식하는 도구주의적 사고경향에 의해 더욱 공고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학교문화 풍토에서 교사들의 학생 통제 방식은 '권위라는 힘에 의한 통제 방식'의 성격을 띠게 된다. 즉,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통제라기보다는 교사의 권위를 빌린 개인적인 판단이나 감정에 의한 통제방식이다. 즉, 권위자의 자의적 권력행사에 의한 통제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학생 통제 방식은 원칙보다는 권리자의 심리적 변화에 따른 통제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권리 제한·침해할 개연성을 갖는다.

요컨대, 현 단계 학교사회에서의 학생인권 상황은 우리 사회의 '저강도 민주화'라는 외적 요인 및 경쟁적이고 권위적인 학교풍토, 이로 인한 '권위라는 힘에 의한 지배방식' 등과 같은 교육 내적 요인과 직·간접적인 관련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10) 조영달, "한국청소년 인권과 교육", 한상진(편), 『현대사회와 인권』, 서울: 나남출판, 1998, p.366



< 그림 1> 학생인권 침해 관련 요인간의 관계

## 2. 학생인권 개선조건

### 1) 법적 · 제도적 조건

#### (1) 학생인권 규정의 제정 · 정비 및 <학생인권보호기구> 설치

인권관련 법률의 제 · 개정 그 자체가 국민의 인권 보장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권법률이 일상적 생활 속에서의 인권보호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실천규정이 마련되고, 이를 통해 삶의 행동원리가 재정립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인권법률에 근거한 세부 실천 규정의 제정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동일한 논리로, <교육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에 근거한 세부

실천적 규정이 요구된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처럼, 학생의 권리 보호를 위한 독립적인 법률 및 이에 근거한 세부 실천 규정의 제정이 전향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 관한 법률> 등의 내용 중에서 학생들에게 적용되어야 할 내용을 종합한 단일 법안 제정이 검토될 수 있는 것이다(가칭 ‘학생권리보호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만약, 법률체계상의 문제로 단일법안 제정이 불가능하다면, 각 상위 인권법률에 근거하여 학생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세부 실천 규정의 제 · 개정이 필요하다. 즉,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학교내 성차별 금지 규정’ 혹은 ‘성폭력 예방 학칙’ 등이 검토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는 ‘학생 사생활 보호 규정’과 같은 각론 규정의 제정이 고려될 수 있다.

학생인권 보호 규정의 제 · 개정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국가기구로 ‘학생인권기구’(가칭 학생인권위원회 혹은 학생인권센타)의 신설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수도 있다. ‘학생인권기구’에는 인권상담, 인권교육, 진상조사는 물론 학생인권 침해자에 대한 경고 · 사과요구 · 배상권고, 교육 · 봉사명령, 피해자에게 가해자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 등 법적 구제정보 제공 등과 같은 실체적인 기능의 부여가 전향적으로 검토될 만하다. 이와 같은 법정기구와는 별도로, 학생인권 문제를 조정하기 위한 지역별 분쟁조정기구의 구성도 검토해 볼 수 있다.

학교 구성원간의 권력관계를 볼 때, 학생과 교사 혹은 학생과 학교당국간의 분쟁 발생 가능성은 높다. 그러나 지금껏 이들 간의 갈등은 주로 교사나 학교당국의 권위나 규제에 의해 무시 · 은폐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교사 개인의 보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도 없지 않았다. 한편,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극단적 저항 전략(언론 폭로를 통해 사회 문제화하기, 개인적 차원의 자구책 행사, 경찰기관에의 고소 · 고발 및 사법기관에의 소송제기 등등)을 통해 분쟁 해결을 시도하고, 이로 인해 문제의 본질을 벗어난 또 다른 분쟁을 불러오는 경우도 있어 왔다. 이 같은 분쟁 당사자간 개인적 차원의 문제 해결 전략은, 오히려 분쟁을 확대 재생산하는 부정적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따라서 교육관련자들 간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이 같은 분쟁조정기구를 통한 분쟁 해결 사례는, 학교 자체 규율의 제정은 물론 교사 · 학생 간 관계설정의 ‘기준’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학생권리 침해 구제 장치로서의 부가적 기능도 갖는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분쟁조정기구는, 학생들에게 ‘합의’와 ‘타협’의 민주적 생활원리를 경험토록 한다는 점에서 교육적 가치를 갖는다.

#### (2) 인권교육의 제도화

현 단계의 열악한 학생인권 상황은 제도의 문제이기 이전에 일차적으로 관념, 즉 개념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인권개념의 미분화('저차원화'된 인권개념)로 인해 학생들은 단지 훈육과 온정적 보호, 통제의 대상으로만 인식되었고, 이로 인해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역시 취약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생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일차적 과제는 학생 삶의 세부영역에 대해서까지 인권개념을 확장하는 일이다. 인권교육을 제도화해야 할 이유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학교교육이나 사회교육 영역에서 인권관련 교육·훈련은 충분히 제도화되지 못해왔다. <교육기본법>이나 <초·중등교육법>에는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 보호 및 차별금지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만,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분명한 정의도 보이지 않고, 실천적 인권교육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 규정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볼 때, 학교교육에서의 인권교육은 '형식적인 제도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권과 관련한 국제적인 협약 등 국제적으로 보편타당한 일반원칙을 적용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금명간 확정될 인권법에서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독립 교과목의 신설 및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행정기관의 지원에 관한 조항 신설이 요구된다.<sup>11)</sup>

그리고 인권교육의 내용은 인권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에서부터 태도변화를 위한 가치교육 및 인권교육 기법이 다양하게 포함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그간의 인권관련 학교교육을 보면, 국민들의 권리내용보다는 사회안정과 법질서 확립을 강조하여 권위주의적 질서를 정당화하는 경향이 강했다. 개별 교육과정의 인권교육 관련 내용을 구체화해 보면, 중등 도덕과의 내용 속에는 인간의 존엄성, 민주주의, 공동체성, 타인의 존중, 규칙의 준수, 협동, 시민윤리 등이 강조되고, 사회과의 내용에는 인간의 존엄성,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권리보호, 기본권 침해의 경우 권리행사 방법, 환경권 등이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이들 내용은 민주시민의 양성이라는 목표를 더 중시하여 인권의 관점에서 기술되어 있지 않고, 현실·실제에 대한 인식과 이에 대한 인권 보호적 차원에서의 기술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지적된다. 따라서 인권교육 내용에는 리스터(Lister)가 제시한 세 가지 요소, 즉 '인권에 대한 교육', '인권을 위한 교육', '인권을 통한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sup>12)</sup> 즉, '인권에 대한 교육'에서는 지식의 영역으로서 권리와 의무에 대한 관련 지식을<sup>13)</sup>, '인권을 위한 교육'에서는 인권을 옹호하고 방어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

11) 참고로 현재 인권관련 기관과 논란을 빚고 있기는 하지만 법무부의 인권법 시안을 보면, 제6조 3항에서 "교육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에 인권에 관한 교육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의무규정을 두어 인권교육의 제도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12) 배경내, "인권교육의 법적·제도적 정비(토론자료)",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한신대학교민중교육연구소, 1999.4.30, p.114

을<sup>14)</sup>, '인권을 통한 교육'은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존중하고 지지하는 분위기 속에서 그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sup>15)</sup> 이를 통해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일상적 삶의 조건을 극복할 수 있고, 인권 문화를 성숙시킬 수 있는 개인적·제도적 실천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학생 대상 인권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권리는 어떤 책임을 암시하고 있으며, 그것은 모종의 의무<sup>16)</sup>로 표현되어 있다는 사실도 중요하게 다룬다. 즉, '인권의 상호 의존성', 나의 인권은 다른 사람의 권리나 사회 구성원들의 이익과 관계를 맷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시킨다. 따라서 인권을 배운다는 것은 곧 나의 인권과 자유가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는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권리 또한 소중하다는 것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인권교육은 인권 논의와 관련된 몇 가지 오해, 즉 '인권논의는 권리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그에 따른 책임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한다', '인권은 너무나 개인적이고 사적인 권리로 강조하며, 집단의 이익이나 공공이익을 무시한다'는 등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교사도 인권교육의 대상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교사는 학교생활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거시적·미시적 수준의 다양한 권력을 행사하는 만큼, 인권교육의 핵심 대상에 포함된다. 권력 행사자로서의 교사가 학생인권에 대한 마인드를 형성할 경우, 민주

13) '인권에 대한 교육'에 포함시킬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권을 획득하기 위해 투쟁했던 인물과 운동, 주요 사건과 조직 등에 대한 지식, 현실에 존재하는 인권침해의 다양한 형태, 국제인권 조약과 국내법이 보장하고 있는 구체적인 권리의 내용 등등이다.

14) '인권을 위한 교육'의 내용에는, 편견이나 고정관념, 차별의식 등에 대한 성찰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가 존중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를 극복하는 능력, 차이를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 긍정적이고 상호존중적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능력, 비폭력·평화적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 타인과 협력하여 공동의 과제를 수행하는 능력,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 인권보장기구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등이 포함될 수 있다.

15) '인권을 통한 교육'에는,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타인의 생각과 느낌에 귀를 기울이는 교육과정, 학습자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교육과정, 타인의 삶에 공감할 수 있는 교육과정, 다른 삶의 방식과 가치가 존중되는 교육과정, 민주적 의사결정과 평화적 문제해결을 추구하는 교육과정 등이 해당된다.

16) 프로테스탄트 자연법 윤리학자인 사무엘 폰 푸펜도르프(Samuel von Pufendorf, 1632-1694)와 유태인 철학자 모세스 멘델손(Moses Mendelsson, 1728-1786)은 의무를 '완전한'의무, 즉 좁은 의미에서의 의무와 '불완전한' 의무, 즉 넓은 의미에서의 의무로 구분한다. '완전한' 의무란, 법적 의무로서, 예를 들면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며, 그것을 위반하지 않도록 국가가 강요하고 처벌할 수 있는 의무를 말한다. '불완전한' 의무는 윤리적 의무로서, 예컨대 양심과 사랑과 자기 통찰력에 근거한 인간성의 의무이며, 이는 국가가 강요할 수 없는 것이다(김승윤 역, "새로운 세계 질서를 위한 보편윤리(Global Ethic for a New Global Order)",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포럼』 제9호, 서울: 한울, 1999 여름, p.20).

적이고 합리적인 교사-학생관계의 재정립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교사의 자의적 권력행사나 부당한 제재·간섭에 의한 인권침해의 사전 예방 차원에서도 의의를 갖는다. 따라서 교사들에게는 입직 전 교육과정에서는 물론 입직 후의 현직연수 과정에서도 체계적인 인권교육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교원양성 기관의 정규 교육과정에서 인권과목의 필수 이수제가 필요하며, 입직 후의 각종 자격연수 및 일반연수 과정에서도 학생인권론이 연수내용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 2) 전략적 선택 : 외적 감시체제 확립

학생 삶의 반인권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개선과 함께 외적 감시체제를 강화하는 것도 가능한 전략적 선택 중에 하나다. 즉, 시민사회와의 감시망을 통해 학교내부에서 인권의 가치와 원칙이 준수되도록 견제·강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같은 외부로부터의 감시나 비판은 학교내부의 변화기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물론 외부집단의 견제장치가 학교의 자율성을 저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민주주의의 '내포적 심화'<sup>17)</sup>라는 차원에서 교육부문에 대한 시민사회의 참여는 이론적·현실적 타당성을 갖는다. 따라서 외적감시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교육부문의 중간구조 (intermediate structures), 즉 교육관련자들의 독립집단이나 자발적 조직이 강화되어야 한다. 한국사회의 중간구조가 전반적으로 취약한데서 연유하는 문제이긴 하지만, 교육부문에서의 중간구조는 건실한 편이 못된다. 물론 그동안 일정한 발전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중간구조의 역할이 지나치게 총체적인 과제에 집착된 경향성을 띤다. 이러한 한계 극복을 위해 기존의 중간구조는 좀더 전문화의 활로를 모색하고, 나아가 다양한 문제의식을 의제화 하고, 이를 현실공간의 진보로 연결시키기 위한 실천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교육부문 중간구조는 학생인권 상황을 진보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학생인권 실태에 대한 조사활동, 학생 삶의 비민주적 요소에 대한 공론화, 학교당국·교사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의 감시 및 고발, 학생인권 여론 형성을 위한 캠페인, 학생인권 보장을 담보

17) 민주주의의 '내포적 심화'란 확립된 절차적 민주주의가 실질적 차원에서 민주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곧 노동자·여성·소수집단(종교·인종·이념·문화 등의 면에서)·장애인·노인 등 주변 화되고 소외된 모든 계층의 정치적 평등은 물론 실질적인 사회경제적 평등이 확보되고, 나아가 민주주의의 실천이 단순히 공식적인 정치영역에만 한정되지 않고 직장·기업·학교·병원·가족 등 통상 사적 영역으로 간주되는 일상적인 삶의 영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포함하다. 요컨대, 내포적 심화는 사회경제적 평등을 상당한 수준에서 확보하고, 참여민주주의를 확산시킴으로써 현행 자유민주주의에서 평등과 참여의 요소가 강화되는 것을 그 핵심으로 한다(강정인, "대안민주주의", 참여사회연구소,『참여민주주의와 한국사회』, 창작과비평사, 1997, pp.50-51).

할 수 있는 입법청원 및 견의·진정 등의 활동을 조직화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활동은 학생인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산시키고, 나아가 학교내부 구성원의 의식전환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일 예로 교육부문의 한 NGO(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가 학생인권 신장 차원에서, 정치권의 '체벌법제화' 시도에 대해 국제인권단체와 연대하여 저지 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좋은 본보기가 된다.

요컨대, 학생인권 상황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도 중요하지만 학교내부의 비민주적 요소를 비판하고, 학교당국이나 교사의 부당한 권리 행사를 통제·견제할 수 있는 외적 감시장치가 요구된다. 이 같은 외적 감시장치의 강화는 학교민주화를 진전시키거나 적어도 후퇴시키지는 않기 때문이다.

## 3) 학교 내적 장치

### (1) 참여적 의사소통망의 구축

해방 후 한국의 교육체제는 국가적 통제의 영역 하에 있어 왔으며, 그 자체의 내적 논리에 의해서, 그리고 그 자체의 자율적 힘에 의해서 운영되어 본 경험이 적다. 지역별 조직, 각급 학교 운영, 목표와 내용 체계, 심지어는 방법과 기술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전반적 원리가 중앙기구의 통제 하에 있어 왔다. 이 같은 교육권력의 중앙 집중화로 인해, 각급 교육기관은 획일화되고, 나아가 각 교육주체들의 참여를 위한 공적 공간은 위축될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각 교육주체(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참여 공간이 확장되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참여민주주의적 교육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은 논리적·사실적 정당성을 갖는다.<sup>18)</sup>

교육에 있어서 참여란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에 영향을 줄 목적을 가진 시민들이 직접적인 중재 없이 관여하는 것"<sup>19)</sup>이다. 여기서의 시민이란 각 교육주체의 또 다른 표현 방식이다. 이렇게 볼 때, '참여민주주의적 교육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은, 각 교육주체 혹은 교육관련자들의 참여와 이를 통해 견제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체제의 확립을 의미한다. 즉, 교육주체나 교육관련자들에 의한 통제장치 구축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가 올바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있다. 참여자, 즉 교육주체에게 참여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힘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만약 교육주체들이 민주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또한 '권리자격'(entitlement)을

18) 교육개혁 논의와 관련하여, 교육민주화의 핵심과제를 교육권력 구조의 균형화로 보는 시각은 이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다. 이종각, "교육권력구조의 균형화와 그 방안", 새사회연대, 『새사회』 제12호, 1995, pp.5-26. 참조.

19) Dale, M. 한국교육정치학회, "참여, 대표, 통제", 『교육정치학론』, 서울: 학지사, 1994, p.148.

가진 ‘권능화’(empowerment)가 이루어질 때 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참여민주적 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전제조건은 교육주체들의 자율권 확대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참여 권한의 강화라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학생인권 보장 방안을 도출해 보면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즉, 학생들의 참여권한 확대 및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다.

우선 학생들에게 참여권한을 확대하는 문제는 ‘학생의 권리주체성’을 인정하는데서 출발한다. 따라서 교사들의 인권의식을 성숙시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운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와 동시에 학교는 학생들이 참여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조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즉, 학교 내의 비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학생들의 참여를 인정·보장·유도하는 유연한 구조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하버마스(Habermas, J)가 의사소통행위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상적 대화 상황’(ideal speech situation)의 전제조건, 예컨대 의사소통의 참여자들 누구나가 의사소통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고, 자기 자신의 감정과 의견을 표현하고 비판하는데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개방적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즉, 학생들에게는 하버마스의 표현대로, 주장적(constative) 언술행위, 표현적(representative) 언술행위, 규제적(regulatory) 언술행위의 자유가 보장되는<sup>20)</sup>,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 같은 제도적 장치가 충족될 경우, 학생들은 자신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결정, 예컨대 학교규율의 제·개정, 학교행사 일정, 학교교육방침의 결정, 분쟁에 대한 처리 과정 등에 의사를 다양하게 반영하고 그 결과로 권력자와는 무관한 이성적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학생들에게 ‘결정된 사항’에 대해 준수를 강요하는 것보다는, ‘결정한 사항’에 대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책임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도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보면, 학생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보장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학생들에게 어떤 참여장치가 보장되어야 하는가?<sup>21)</sup> 우선, 학생자

20) 주장적 언술행위란, 질문을 제기하고 주장의 논거를 대거나 반박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또한 표현적 언술행위란 자기의 태도, 감정, 의도 등을 표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규제적 언술행위란 명령하고, 반대하고, 허락하고, 금지하는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

21) 학생들에게 ‘참여’가 중요한 이유는, 참여가 도구적 이해관계를 넘어 ‘내재적 가치’(intrinsic value)의 획득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내재적 가치란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서 갖는 자기성취욕구에서 비롯되며, 이는 사회 내에서 끊임없이 자기개발을 통한 자아실현의 과정으로 나타난다 [Young, I.M.(1990). *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Princeton University Press, p.92]. 김대환도 참여의 가치를, 소외로부터 벗어난 사회적 정체성의 획득을 의미하고 그 자체가 자아실현의 통로가 되며(본래적 가치), 실제 참여과정을 통하여 참여자의 자기개발이 이루어지고(자기개발가치), 사회구성원의 이익을 보호하는 한편 그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을 심화하는 수단으로 기능한다(도구적 가치)고 보고 있다(김대환, “참여의 철학과 참여민주주의”, 참여사회연구소, 「참여민주주의와 한국사회」, 서울: 창작과비평사, 1997, p.20).

치회가 학생들의 실질적인 이익대변 기구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학교당국의 지도·간섭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학생자치회 기능이 회복될 때 쌍방통행식 의사소통이 가능해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 학교규칙 제정에 학생들의 의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 기존의 상명하달식·일방통행식의 학생자치회 관리가 ‘자치회의 종속화’는 물론 다양한 학생자치활동(동아리활동)을 위축시켰다는 점에서도 ‘최소간섭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에의 학생대표 참여도 궁정적으로 검토될 만하다. 학교운영위원회가 학생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을 심의하는 경우, 학생들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제도화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학생대표를 참고인 형식으로 출석시켜, 학교규칙 제정, 학교내·외행사 결정, 학생 후생복지 시설 문제 등에 대해 학생들의 견해를 청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학교운영위원회에의 학생 참여 방식은 참여민주주의 원리의 원안(原案)이라는 점에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학생대표가 교무회에 참여하여 학생자치회의 결정 사항을 발표하고, 학생복지와 관련한 학생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도 있다.

이외에도 학교운영과 관련한 다수 학생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학교자체의 포럼, 갈등 발생시 학생과 교사, 행정가로 구성된 분쟁조정협의회, 학교문제 토론을 위한 의제설정위원회 등의 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이 교사의 교육권한과 대립되는, 인간일반이 공유하는 기본권리인 사상, 표현, 결사, 저항의 자유, 교육받을 권리, 교육내용이 부당하다면 거부할 수 있는 권리, 교육여건에 대한 개선요구 권리, 강의방식·실험방식에서 드러나는 미시적인 권리행사에 대해서도 발언하고 개입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학생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또한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교사들에게도 전문적 자율권이 확대되어야 한다. 교사들의 자율권 확대는 자신들의 이익을 넘어, 학생들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한 필요조건이 된다. 교사에게 낮은 수준의 자율권이 보장되는 풍토에서는 중앙권력에 의한 학교운영 원리가 강하게 작동하게 될 것이고, 이는 곧 권리관계의 가장 하위 층위에 놓여 있는 학생들의 자유·권리의 인정범위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 (2) 민주적 학교규율 제정

모든 사회는 자체의 규율을 가지게 된다. 이때 이 규율은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에 바탕 한다’는 전제가 확고할 때, 구성원들의 생활 원칙으로서의 생명력을 갖게 된다. 그러나 학교의 경우를 보면, ‘합의의 과정’, 즉 규율 제정 과정에 주요 구성원인 학생들의 참

여는 배제되어 있다. 이는 학생이 아직 미성숙자인 만큼, 규율을 정할 정도의 자율적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논리에 근거한다. 따라서 학교규율은 성숙자가 미성숙자를 권력적으로 통제하는 메커니즘의 성격을 갖는다. 즉, 현행 학교규율은 학생들에게 '특정한 방식'(성숙자들이 요구하는 삶의 방식)으로 생활을 조직하도록 규제하는 요소를 강하게 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생인권 상황을 개선·신장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합의를 통해 시대적 환경을 반영한 '민주적 학교규율'의 제정이 요구된다.

민주적 학교규율의 제정 방향은, 시민 사회에서 요구되는 '공동체적 가치를 인정하는 자율적 인간' 육성에 맞추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학교규율에서 확인되는, 획일화를 강요하는 전체주의적 규율 내용의 삭제·개정이 요구된다. 특히, 학생의 개인·사생활이나 표현·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규율 내용에 대해서는 전향적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

또한 학교규율 내용을 구성하는데 있어서는 '최소제한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현행 학교규율을 보면, 너무 세세한 내용까지를 규제하고 있다. 이렇게 세세한 학교규율을 적용하다 보면, 필요 이상으로 학생들의 권리목록이 축소·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현행 학교규율을 개·제정할 경우에는 공동체적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포괄적 원칙만을 제시하는 '최소제한의 원칙'이 지켜질 필요가 있다. 규제가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유의 소중함을 깨우치거나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자율 능력을 신장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교규율이 구성원들의 '자율지배의 생활원리'가 되기 위해서는, 개·제정 과정에서 학교 구성원들 간의 참여적 토론이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학생들이 학교규율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에서 보면, 합의 도출과정에 학생들의 참여가 허용되어야 한다. 학교당국에서는 학교규율 제정 과정에 학생을 참여시키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학생회가 자신들의 논의를 통해 제정한 '자율 규정'을 제출 받고, 이를 근거로 학교규율을 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는 학교규율 제정위원회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학생대표를 참여시키고, 심의 과정에도 학생 참여를 제도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규율 제정과정에서의 학생 참여 제도화는, 학생들에게 '참여'의 가치를 확인시켜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활환경 속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의 당사자로서의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제정된 '민주적 학교규율'은, 학생들이 요구하는 '자율'과 학교당국이 강요하는 '질서'간의 긴장을 줄이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 (3) 학생 옴버즈맨 제도 도입

학생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학교당국이나 교사는, 학생들의 불만 요소를 제거·개선하는 일에 일차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학생들이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적합한 개선 안은 올바른 현실 진단을 토대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의견을 항상 수렴할 수 있는 채널을 공고화 할 필요가 있다. 그 방법적 전략으로 채택할 수 있는 방안이 학생 옴버즈맨 제도이다. 특히, 전자통신 환경의 구축과 관련하여 인터넷을 활용한 학생 옴버즈맨 제도는 직·간접적인 비용이 저렴하다는 점에서 적극 검토될 만하다.

단위학교에서는 일정한 수의 학생모니터를 공모를 통해 모집하고, 이들로부터 정기적으로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모니터 내용을 접수받아 학교정책에 반영하는 것이다. 이때, 모니터 대상은 교과수업, 특별활동은 물론 학교정책, 학생복지 수준 등을 망라한다. 학생들이 모니터한 내용을 접수한 학교장은, 그 처리 결과에 대한 답을 반드시 회신하고, 처리 불가능한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타당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

이 같은 학생 옴버즈맨 제도는 교수·학습 과정이나 학교정책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권리 복원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교사평가제의 도입과 관련해서,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반응을 일정한 수준에서 반영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될 만하다.

## (4) 체험적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학교의 인권환경은, 학교 구성원의 인권의식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학생인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기법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개발·운영되어야 한다. 교육과정 편제상의 '제도적 자율공간'(창의적 재량활동)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조건(제7차교육과정)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한 교사 자율 연수 학점화 정책도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활용 가능성을 높여준다.

인권교육은 '인권에 대한 지식의 획득, 인권을 지키고 옹호하기 위한 기술 및 인권의 가치를 통한 태도의 형성'을 주요 요소로 삼는다.<sup>22)</sup> 즉,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이론적 학습은 물론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인권을 주장할 수 있는 방법적 기술을 중시하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서로의 인간다움이 중시되는 학습환경을 통해 인권

22) 인권교육의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 인격과 인간존엄성의 완전한 발전의 추구, 모든 국가·원주민·인종·민족·종교 및 언어 집단 간의 이해·관용·성의 평등 및 우호 관계의 증진, 모든 사람의 효과적인 참여, 평화 유지를 위한 유엔 활동의 증진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전달 및 '태도'의 형성을 통하여 보편적인 인권 문화를 건설하는 데 목적을 둔 훈련, 보급 및 전달 노력"으로 정의된다. 류은숙, "그들에게 인권을 가르치자", 『우리교육』(중등), 우리교육사, 1998년 11월호, p.60.

을 존중하는 태도의 형성을 중시한다. 인권교육 참가자들 스스로가 ‘존중받고 있다’는 실감을 해야 인권 존중의 태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권교육이 지식·기술·태도의 3요소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 기법과 운영 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 즉, 인권교육이 옹호하는 가치는 ‘참여’와 ‘상호작용’을 통해 발현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여를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접근 방법이 도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체험을 중시하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역할놀이, 모의실험, 시·그림·음악 등 예술 활동, 창조적인 글 쓰기, 협동게임, 토론, 브레인스토밍, 견학 등과 같이 학습자의 경험을 중시하고 존중하는 활동 중심적 프로그램이 인권교육의 목적 달성을 유용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체험적 인권교육의 가치는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체험적 인권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민간기구를 인권교육 연수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을 담당하게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 하다.

#### (5) ‘적법한 절차’의 보장 및 심판기구의 공정한 운영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징계 과정에서는 적법한 절차가 보장되어야 한다. 학교에 따라서 징계의 유형과 심판기구의 구성·운영에 따라서 요구되는 적법한 절차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절차적 적법절차의 원리를 준거로 할 때, 최소한 징계대상자는 징계처분의 이유와 증거에 관한 통지를 받아야 하며, 또한 해당 학생에게는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그리고, 징계형량에 대해 불복할 의사가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재심 청구권을 허용해 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징계형량을 결정하는 심판기구도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만약, 심판기구를 학교의 편의에 따라 운영하는 경우, 일부 권위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징계형량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학생 징계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보장하고 심판기구를 공정하게 운영하는 것은, 학교의 편리주의 행정 관행을 개선하고,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문제에 대한 결정과정에의 참여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도 긍정적이다.

#### (6) 학생인권 보호 지침서(『학생인권 수첩』) 발간·보급

인권이란 인권주체가 인권에 대해 알고 있는 만큼 향유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에게 어떤 영역의 권리목록이 보장될 수 있는가를 아는 것은 권리행사에 선행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보면, 후진적 학생인권 현실은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협소한 이해와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체계적인 인권교육을 지속해야겠지만, 현실 상황에서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권 안내서를 발간·보급하는 일도 필요하다. 이 인권지침서에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어떤 권리를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는지,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부당한 간섭이나 제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제신청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학생징계와 관련해서도, 교육적 체벌의 종류, 체벌의 절차, 체벌권자의 권한 등에 대한 내용은 물론 징계에 대한 불복 절차도 상세히 명시하여 학생들이 절차적 적법절차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에 덧붙여 학생들에게 허용되는 각종 권리 행사의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내용과 타인의 권리보호에 대한 내용도 포함해야 한다. 이 같은 인권지침서는 학생들이 자유 행사의 범위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물론 교사의 권리 행사 인정 범위를 설정하는데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지침서의 발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sup>23)</sup>

#### (7) 교권 지침서 발간·보급

학교사회에서 교사의 교육권한 행사는, 학생·학부모의 권리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교사들의 입장에서도, 올바른 교육권한 행사를 안내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안내 자료의 성격을 띠는 『교권지침서』(가칭)의 개발·보급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이 『교권지침서』 내에는, 교권의 명확한 의미와 행사 범위, 아동·학생의 권리와의 관계, 학부모의 권리와의 관계, 권한행사의 한계 및 교사의 근무관계와 권리·의무 등에 관한 내용이 종합적으로 수록되어야 한다. 특히, 학교에서 자주 발생하는 교사에 의한 학생인권 침해 사례, 예컨대 체벌문제, 인격권·프라이버시권 침해문제, 표현의 자유 제한 문제 등과 관련해서는 법률 지식을 적용한 구체적인 행동 원리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같은 『교권지침서』는 ‘교권’의 바른 의미와 ‘교권행사’의 한계를 명확히 제시해 줌에 따라, 학생인권은 물론 교사 자신의 권한 보호에도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23) 국내에서 발간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인권지침서의 대표적인 예는, 인권정보센터 연구진이 발간한 『인권수첩』을 들 수 있다(한상범 외, 『인권수첩』, 서울: 현암사, 1999). 이 『인권수첩』에는 일반인이 국가기관이나 경제단체를 대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물론 권리구제 기관에 대한 정보도 상세히 수록되어 있다.

## V. 결 론

학생 삶의 반인권성은 제도에서 비롯된 문제라기보다는 일차적으로 개념의 문제이다. 한 사회에서 인권의 내포와 외연의 심화는 개념의 분화 및 정당화에서 비롯된다. 즉, 어떤 사회부문에서 인권문제가 제기된다면, 그 근본 원인은 불완전한 제도 때문이라기보다는 일차적으로 개념의 미분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학생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조건의 충족에 앞서, 학생인권 개념에 대한 분화와 이에 대한 정당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교사·학생·교육행정가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프로그램에의 참여기회 확대가 요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학교 민주화 이행 전략으로, 학생 및 교사의 자치권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학교사회의 인권환경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의 권한 확대가 전제될 때 가능하다. 인권이란 그 자체가 부당하고 불필요한 통제나 억압의 불인정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동안 교사들은 중앙집권형 교육권력 구조 속에서 통제나 감시의 대상으로 비 주체화되어 왔다. 교사들의 이러한 존재조건이 학생들의 인권침해와 연관을 맺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순환적 오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참여기회 확대 및 참여 방식의 다양화를 통한 권한 및 책임의 분산이 요구된다. 예컨대, 교사평의회의 신설 및 인사위원회 등과 같은 협의 기구 활성화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학생들에게도 자치와 자율 그리고 민주적인 의사소통 과정을 학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자치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생들이 자기주장을 할 수 있고, 참여자로서 의사결정에 중요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허용되고, 그 운영이 보장되어야 한다. 예컨대, 학생회의 자율적 운영, 학생관련 의제의 설정 및 제출, 학생자치 규율의 제정, 정보접근권(Access권)의 행사, 학교축제의 자율적 기획·운영, 졸업앨범 제작 등에 대해 학생들이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자치권 허용과 관련해서, 단위 학교는 자치활동에 필요한 물적 조건을 확보하는 일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즉, 학생회 사무실의 확보, 학생전용 게시판 설치, 다양한 클럽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사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자치권의 허용은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전제조건으로 하는 만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도 긍정적이다.

이와 함께, 현재 학교에서 도입·실시하고 있는 각종 제도의 정상적 운영 의지가 요구된다. 현행 학교운영 제도가 학생인권 보호 장치를 만족스럽게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도가 갖는 본래 취지를 살린다면 현재보다는 많은 부분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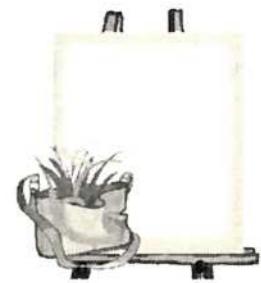
기 때문이다.

학생인권 신장을 위해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것은, 교사 및 교육행정가의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 전환이다. 즉, 학생인권 보장은 교권 보호 차원에서도 긍정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 인권이 가진 기본 성격 중의 하나는 '권리는 상호 의존한다'는 것이다. 곧 나의 인권은 다른 사람의 권리나 사회 구성원들의 이익과 관계를 맷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학생인권이 보장되는 학교 상황은 동시에 교사의 교육권한이 존중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인식전환이 전제될 때, 양자가 서로 존중하고 보호되는, '상호이익'을 교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주제 발제 2

## 소중한 출발 –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

박 영 관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U.N이 세계 인권선언이 채택한 지 56년, 세계는 모든 인간이 자유·평등의 권리를 실현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신장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아동(학생)은 그 존엄한 가치가 특별히 보호되어야 대상으로, 전 세계가 아동 권리 보장의 의무를 천명하고 있다. 1989년 채택되어 1991년 우리나라로 비준한 '유엔 아동·청소년 권리조약'(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국제 조약뿐이 아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제10조)고 하는가 하면 '학교 교육이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교육기본법 제 12조)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국가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2002)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시한 학교생활 규정(안)이 '학생 인권의 악화 또는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교육부의 학교생활규정(안) 전반과 세부 사항에 대해 학생의 인간적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하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각종 세계적 선언과 조약, 법과 국가기구의 의견이 이렇다면, 최소한 우리의 학교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신장시키려는 노력의 흔적이 보여야 한다. 그러나 학교야말로 그 구성원들인 학생의 인권이 일상적으로 침해당하고 현장이며,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현실이다. 수년 전부터 우리 사회도 사회적 소수자·약자의 인간적 권리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성과 장애인을 위시하여 노약자, 빈민, 심지어는 외국인 노동자나 성적 소수자에 대해서도,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그 권리 의식만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동·학생에게로 눈을 돌리면 조약이나 선언은 물론 무소불위의 헌법조차 그야말로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포기해야 할 것이 너무 많다. 자신을 마음껏 표현하고픈 욕망이 가장 왕성한 시기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규정과 자의적 해석에 의해 통제 당한다. 심지어 속옷의 색깔이나 모양까지 선택할 수 없으며, 내밀한 사생활조차 생활지도라는 명목 앞에서는 유리 가운을 입은 형국이다. 뜻이 맞는 벗들끼리 모임을 해도 감시 받아야 하고 성적으로 인간의 가치가 재단 당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인간은 생각을 자기검열할 수밖에 없고 스스로 사고는 영역을 좁혀나가기 마련이다. 하긴 신체적 혼순이나 체벌이 법으로 보장되고, 체벌하는 방법을 교육부가 지도하는 상황이니 더 이상 말해 무엇할까?

무엇보다 이러한 일들이 대부분 교육의 이름으로 주로 교육자에 의해 주도되고, 부모

나 사회의 방조 내지 조장에 의해 빚어진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학교는 학벌사회의 일원으로 편입하기 위한 유력한 과정으로 치부되고, 교사는 가르치는 자로서 학생을 자의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의 인권은 권리가 아니라 학교나 교사의 자의적 시혜에 의한 하사품으로 전락하고,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자각하는 순간 그 하사품마저 박탈당하고 배척당한다. 그리고 그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학교의 경우 일부 학부모나 사회의 비난과 질책을 감수하기가 벅차다. 최소한 학교에서는 획일적 통제와 복종만이 질서이고 선이며, 자기 표현과 개성은 혼란이며 악이다.

헌법을 신뢰한다면 학생은 국민이 아니며, 대한민국은 국가가 아니거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국가다. 교육기본법이 교육을 규정하는 법이 우리 사회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면 학교는 교육을 그르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에 의하면 교육부나 교육부 중 하나는 국가기관이 될 수 없다.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것일까? 헌법이나 법에 규정된 바를 현재 교육하는 세대들은 경험한 바가 없다. 기성세대는 그들이 교육받는 과정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혹은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누려본 바도 주장해 본 바도 없이 획일적인 주입에 순응하는 학교생활을 해 왔다.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학생은 사육 당하는 것이 당연한 존재일 뿐이다. 즉, 헌법에 규정된 인간으로서의 권리 따위는 시험 답안지에 정답으로 기재할 추상적인 개념으로는 존재할지언정 그들이 보장해 주어야 할 의무가 아닌 것이다.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추상적 개념을 그것도 반대편 입장에서 실천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사랑해 보지 못한 사람에게 실연의 아픔을 이야기하라는 것과 같다. 경험하지 못한 것을 실천하기 힘든 것이 일반적으로 수긍되는 사실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누리지 못했으니 너희도 누리지 마라는 교사의 태도가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에 의하면 국가기관인 교육부의 학생생활지도 규정 예시 안 조차 관련법을 위배한 것이 수두룩하다. 한 나라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기관이 교육현장에 대한 일종의 지침으로 마련한 안이 법령을 어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 학교의 각종 규정이 헌법이나 법률을 무시하는 것은 필연의 결과이다. 그리고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에 대해서 2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지역 교육청 단위의 규정력을 가지는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조례는 헌법이나 법률보다는 현실로 학교나 교사에게 다가갈 수 있고 구체적으로 교육

현장을 규제할 수 있으며, 학교의 제규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조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인권’ 등의 포괄적 개념을 교육감, 학교, 교사의 의무로 구분하여 명기함으로써 각급 기관이나 교육종사자들의 역할을 세분화 할 수 있다. 실천할 수 있는 규정으로 가능하는 것이다. 조례는 도시와 농·어촌, 중앙과 지방, 지역의 여건과 정서 등의 차이를 고려할 수 있고, 법률에 비해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제·개정할 수 있다. 결국 법률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한 과정으로 조례는 필수적이다.

제시될 조례안은 각종 조약과 선언, 권리안 그리고 법률을 바탕으로 마련된 것으로, 이제 부산 교육현장의 현실과 조화를 모색할 단계를 밟고 있다. 따라서 조례안이 시기상 조라거나 ‘생활지도를 포기하란 말이냐’라는식의 항변은 좀 더 뒤로 미루는 것이 옳다. 지금은 항변 대신 이러한 점을 이렇게 바꾸자는 의견을 개진하고 합리적으로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그 과정 역시 조례안을 마련한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이다.

그래도 생활지도를 포기하겠다는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다. 인권을 포기하는 것보다는 생활지도를 포기하는 것이 옳다고. 겉으로 순종하지만 속에서는 폭발할 계기만 기다리는 모범생보다는 반항하고 일탈하더라도 권리를 누릴 줄 아는 문제아가 남의 권리도 존중할 줄 아는 법이라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리면서, 활발한 의견 개진과 비판으로 ‘작지만 소중한 출발’을 함께 함으로써 한발 나아갈 수 있음을 힘이 될 수 있는 위안이다.

# 부산광역시 학생인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권리에 관한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직속기관(이하 교육청) 및 학교 등(이하 학교)과 교직원 등(이하 교사)의 책무와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인권의 보장과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각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 2조 2,3,4,5,6항에 규정된 기관을 말한다.
2. 학생은 1호에 재학중인 자를 말한다.
3. 교사는 교육청 및 학교에 종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교육청은 학생의 권리를 존중하고 모든 시책을 통하여 학생 권리의 보장과 신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학교와 교사는 ①항의 교육청 시책에 협력하고 당해 시설 내에서 학생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교육청과 교육감은 학생의 권리가 폭넓게 보장되도록 부산광역시 및 구·군 행정기관, 유관기관, 공공단체 등에 협력을 요청하고 공동 활동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들이 성실히 시행될 수 있도록 각 학교와 교사를 지원·지도한다.

## 제2장 교육받을 권리

**제4조(주체로서의 권리)** 학생은 헌법에 보장된 교육기본권에 의거 교수·학습과정에서 인격적 주체로서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5조(수업받을 권리)** 학생은 법률과 학칙의 결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수업 참여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학교는 교육과정의 변칙적 운영이나 임의적 교내외 행사 등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6조(선택의 권리)** ① 학생은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로운 선택의 권리를 가지며, 자기 판단에 따라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재량활동이나 선택과목 등에서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7조(도움을 받을 권리)** 학생은 학습 과정이나 학교생활에서 학교나 교사에게 도움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학교나 교사는 학생의 요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3장 자치에 관한 권리

**제8조(자치활동)** 학생은 자치를 위한 조직·기구를 자유롭게 구성하고 운영할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학생의 자율적 결정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제9조(학생회 구성 및 운영)** ① 학생은 자율적으로 학생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권리가 진다.

② 학교는 학생회 및 자치활동 예산으로 학교운영비의 2% 이상을 책정하고, 그 자율적인 운영과 집행을 보장한다.  
③ 학교의 학생지도위원회 등 학생자치활동지도기구는 학생의 자문이나 요청이 있을 시 도와줄 수 있으며, 학교는 학생회 결정이나 자치활동의 결과를 존중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④ 학교는 학생들의 원활한 자치활동이 가능하도록 학생회실 등의 공간을 제공해야 하며, 필요한 집기나 시설·설비를 확보해야 한다.

**제10조(피선거권의 제한)** 학생의 각종 선거권·피선거권은 제한할 수 없다. 단, 징계로 인한 피선거권 제한은 최소한의 범위로 할 수 있다.

**제11조(동아리 조직 및 계발활동)** ① 학생은 희망하는 동아리 조직이나 계발 활동을 제한 당하지 않는다.

② 학교는 동아리 및 계발활동을 위해 유휴 시설의 우선 배정, 예산수립, 필요한 외부 전문가나 강사초빙등 학생의 요구를 존중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적극 지원한다.

**제12조(학교운영에 관한 권리)** ① 학생대표는 부산광역시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회의 공개원칙에 의거, 학교운영위원회 참관을 보장되며, 필요시 정해진 절차에 의거 발언할 수 있다.

② 학교는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교외 활동과 교복, 앨범, 체육복 등 학생용품의 내용과 선정에 대하여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발언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제4장 문화 및 복지에 관한 권리

**제13조(학생문화 활동)** 학생은 자유로운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4조(문화 프로그램의 개발·운용)** 학교는 학생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교양교육, 초청강연, 공연, 전시 등 각종 문화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여야 한다.

**제15조(학예제)** 학예제는 학생회 주도로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16조(학생 복지)** ① 학생은 학교에서 성별, 성적,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등과 관계없이 최선의 복지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청은 학교에 학생복지를 담당할 사회복지사 등 복지전문가를 배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17조(복지 및 편의 시설)** ① 학교는 다음 각 호의 학생용 시설·설비 및 편의를 위한 물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실내 휴게시설
2. 정수기
3. 개인사물함
4. 캠의실
5. 휴지 등 편의물품

② 교육청은 학교 신설시 ①항의 규정된 시설·설비를 해야 한다.

**제18조(학생의 날)** 학교는 11월 3일 학생의 날 학생회 자율로 다양한 행사나 집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제5장 신체와 노동의 자유에 관한 권리

**제19조(체벌 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어떤 경우에도 체벌 받지 아니한다. 이 경우 체벌이란 신체나 도구를 이용한 타격뿐 아니라 신체적 고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② 학교는 임의 삭발 등 학생의 신체를 해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제20조(부당한 노동을 하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교육적 목적 여부와 상관없이 연령에 비해 과다한 노동을 강요받지 않는다.

② 학생은 교육 목적과 관련 없는 학교와 교사의 임의적 판단에 의한 노동을 강요받지 않는다.

③ 학생은 학교의 교직원 전용 시설 등 학생이 사용하지 않는 시설·공간에 대해 청소, 관리 등의 노동을 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제6장 사생활을 누릴 권리

**제21조(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학생은 가족, 가정, 교우관계 등의 사생활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그 비밀은 보호해야 한다.

**제22조(정보에 관한 권리)** ① 학교나 교사는 학생의 개인 정보의 수집이나 처리·보관에 있어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하여야 하며, 본인 혹은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② 학생 개인의 정보는 수집 당시에 공지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학생의 부모 혹은 보호자는 자녀의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으며, 부정확한 내용이나 잘못 기입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내용, 학생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해서는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개인의 물품 관한 권리)** 학교와 교사는 집단적 혹은 학생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소지품 검사 및 몰수를 할 수 없으며,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의 사적 기록물을 열람 할 수 없다. 단, 초등학교에서 올바른 생활습관 교육을 위한 일기장 검사나 용의검사 등의 교육적 목적이 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4조(정보·통신의 권리)** 학생의 정보·통신에 관한 권리는 수업이나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호되어야 한다.

**제25조(모욕당하지 않을 권리)** ① 교사는 순화된 언어를 사용해야 하며, 학생의 인권이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언사를 해서는 안 된다.  
② 학교와 교사는 학생에게 타인의 사생활이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 제7장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

**제26조(의사 표현의 자유)** 학생은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자유를 가지며, 부당하고 임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27조(학내언론)** 학교는 학생신문이나 방송, 교지 등 학생 언론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제28조(홈페이지의 익명성 보장)** 학교와 교육청은 홈페이지 운영에서 학생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고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9조(집회·결사의 권리)** 학생의 교내 집회 및 결사는 학사일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제30조(교외활동에 참여할 권리)** 학생은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한 교외 문화행사 및 사회활동의 참여를 제한 받지 아니한다.

## 제8장 적법한 절차를 누릴 권리

**제31조(적법절차의 권리)** 학생은 학교의 제 규정이나 징계 등을 통한 권리의 제한이나 불이익을 당할 경우 반드시 적법한 절차가 보장된다.

**제32조(학칙 및 제 규정)** ① 학교의 제 규정은 학생의 사생활 및 인권을 침해할 수 없으며, 이 조례에 의해 보장된 학생의 제 권리를 관련 규정에 명시하여야 한다. 단, 교육적 필요에 의해 그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는 최소화하되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한다.  
② 학생 생활 관련 규정은 학생 스스로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으면서도 학생 개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  
③ ②항의 취지 하에 규정 제·개정 시 학생 의견 수렴 절차를 제도화하고, 학생자치 기구의 개정 발의권을 보장해야 한다.  
④ 학교의 제규정은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서술되어야 하고, 또한 학생을 잠재적 징계대상자(비행행위자)로 간주하는 표현을 쓸 수 없다.

**제33조(절차적 적법절차)** ① 학생은 헌법 제12조 1항에 의거 적법절차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할 수 없다.  
② 학생의 징계는 공정한 심의기구 구성을 통한 심의, 징계 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진술기회 부여, 불복에 따른 재심 요구권을 반드시 인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권리에 대한 정보를 학생 당사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전달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제34조(실체적 적법절차)** 징계의 기준과 사유는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며, 학생을 징계에 회부할 때는 그 사유가 징계규정에 의거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 제9장 학생인권 보호 기구 설치 및 인권교육·연수

**제35조(학교 인권보호기구 설치)** ① 학교는 학생의 인권 보호와 그 침해의 예방, 치유를 위해 학생, 학부모, 교사로 구성되는 교내 학생인권보호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①항의 기구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6조(교육청의 인권보호기구 설치)** 교육청은 학생의 인권 보호와 그 침해를 예방, 치유하기 위해 교육주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학생인권보호기구를 설치·운영 하여야 하며, 그 역할과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성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중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교육위원회 1-2인,  
교사 2-3인,  
학부모 2-3인,  
법률전문가 2인,  
인권전문가 2인  
기타 시민단체 대표 등 15인 내외로 한다.
2. 역할 : 1) 각종 정책이나 시책, 교육과정상의 인권보호 및 침해 예방 활동  
2) 학생 인권을 보호·신장하는 정책 연구·개발 및 건의  
3) 학생 인권 침해 사례나 분쟁에 대한 조정  
4) 본 조례안 및 각종 학생인권관련 규정의 해석  
5) 기타 학생 인권 보호 및 신장과 관련한 활동
3. 기타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7조(학교내 인권교육·연수)** 학교는 학기당 1시간 이상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학생교육과 교사 연수를 연간 계획에 의해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학생교육의 내용은 학생회와 사전 협의한다.

**제38조(교육청 인권 연수 및 지원)** 교육청은 모든 직무연수 시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연수를 1시간 이상 편성하여야 하며, 학교의 학생교육과 교사연수를 위한 자료 개발 및 지원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부 칙

**제1조** 이 조례는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교의 장은 사설교육기관이나 수련원 등에 학생을 위탁하여 교육할 시 이 조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제3조** 학교는 이 조례안에 맞추어 제 규정을 2005년 2월까지 재·개정하여야 한다.

\*\*\* 이 조례안은 1차로 작성된 초안으로, 현재 다양한 경로의 의견을 들어 수정·보완 중입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 부산광역시 학생인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권리에 관한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직속기관(이하 교육청) 및 학교 등(이하 학교)과 교직원 등(이하 교사)의 책무와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인권의 보장과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 조례안의 목적을 학생인권의 보장과 신장으로 하면서, 조례안의 적용범위를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속기관, 학교 및 전 교직원으로 하였다. 이는 조례안이 미칠 수 있는 범위를 총망라 한 것이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각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 2조 2,3,4,5,6항에 규정된 기관을 말한다.
2. 학생은 1호에 재학중인 자를 말한다.
3. 교사는 교육청 및 학교에 종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 '2항 초등학교·공연학교, 3항 중학교·고등공연학교, 4항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5항 특수학교, 6항 각종학교'로 규정되어 있는데, '1항 유치원'을 제외한 모든 학교의 학생 및 교육관련 종사자를 적용범위로 하고자 하였다.

**제3조(책무)** ① 교육청은 학생의 권리를 존중하고 모든 시책을 통하여 학생 권리의 보장과 신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학교와 교사는 ①항의 교육청 시책에 협력하고 당해 시설 내에서 학생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교육청과 교육감은 학생의 권리가 폭넓게 보장되도록 부산광역시 및 구·군 행정기관, 유관기관, 공공단체 등에 협력을 요청하고 공동 활동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들이 성실히 시행될 수 있도록 각 학교와 교사를 지원·지도한다.

\* ① 학생 인권의 보장과 신장을 위한 교육청의 책무성과 실제 대책을 세워 실천할 것을 규정하였다.

② 학교내 교육종사자는 교육청의 학생인권관련 시책을 충실히 실행할 의무를 규정하였다.

③ 학생인권 보호의 실질적 흐름을 거두기 위해 지방행정 기관이나 시민·인권단체 및 관련 제 단체와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현장 학교 지원 및 지도의 의무를 규정하였다.

## 제2장 교육받을 권리

**제4조(주체로서의 권리)** 학생은 헌법에 보장된 교육기본권에 의거 교수·학습과정에서 인격적 주체로서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 학생의 학습권은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권리라는 전제에서 다소 포괄적이지만 권리 규정의 첫머리에 배치하였고, 학생은 단순히 수업 대상으로서의 권리가 아니라 한 인격의 주체로 대접해야 한다는 정신을 담으려 하였다.

**제5조(수업 받을 권리)** 학생은 법률과 학칙의 결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수업 참여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학교는 교육과정의 변칙적 운영이나 임의적 교내외 행사 등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 학습권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개념으로 수업에 참여할 권리(영어: right to participate)나 교사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수업받을 권리(영어: right to receive education)를 명시하면서, 학교장이나 교사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수업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특히 교사 임의의 생활지도나 일부 고등학교의 변칙적 일과 운영으로 인해 특정 과목 중심의 입시 중심 교육으로부터 학생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였다.

**제6조(선택의 권리)** ① 학생은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로운 선택의 권리를 가지며, 자기 판단에 따라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재량활동이나 선택과목 등에서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충학습이나 특기적성교육 등 정규교과 외 교육은 원칙적으로

로 학생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특히 인문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전원 참여를 강요하고, 신지어 일부의 경우 교과 진도를 나가는 경우도 있다. 1,2학년의 경우는 자신이 대학 입시때 시험보지 않을 과목조차 강제로 보충학습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 점에 대해 설문조사 결과 교사(교사설문 8번)의 48.4%가 ‘부당하므로 시정되어야 한다’고 답한 반면 학부모(학부모설문 4번)는 42.9%가 그렇다고 답하여 부당함에 대한 인식도는 교사가 높다. 동시에 ‘부당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는 다소 모순되는 문항을 교사 40.0%, 학부모 33.0%가 선택하여 현실에 교사가 현실에 순응하는 정도가 높았다. 이는 부당한 문제에 대한 시정 의지가 높은 한편, 직접 강제 보충학습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자기합의화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반면 학생을 위해 강제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힌 학부모가 20.8%로 4.2%의 교사보다 5배 가까운 수치가 나오는 것은 공부에 대한 학부모들의 바램을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다. 동일한 질문을 학생 설문에서 제외한 것은 학생들의 반응은 설문을 통해 조사해도 유의미한 수치가 나오기 힘들 것이라는 판단에서이다. 설문조사 결과는 조례안이 교사나 학부모의 희망에 반드시 부합한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 견해 차이나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라는 점과 ‘안’이라는 전을 감안해 평庸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절대 다수 학생의 희망이 반영된 것도 사실이다.

② 7차 교육과정상 학생의 과목선택 폭은 상당히 넓음에도 현실은 학생선택권이란기 보다는 학교선택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교사 배치 문제나 선택 학생의 수, 시설 등을 감안할 때 이 규정이 유의미한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숙고를 요한다. 반면, 재량 활동의 경우는 보다 다양한 수업 편성과 학생들의 희망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노력이 학교나 교육청, 교사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 의견 수렴을 더 거쳐야 할 문제이다.

**제7조(도움을 받을 권리)** 학생은 학습 과정이나 학교생활에서 학교나 교사에게 도움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학교나 교사는 학생의 요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학생은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평庸한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학생은 보다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도와줄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권리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 제3장 자치에 관한 권리

**제8조(자치활동)** 학생은 자치를 위한 조직·기구를 자유롭게 구성하고 운영할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학생의 자율적 결정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포괄적 규정이다. ‘학생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권리’라는 표현 대신 ‘자치를 위한 조직·기구를 자유롭게 구성하고 운영할 권리’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학생자치기구의 형식·명칭 등을 학칙이나 학생생활규정에 미리 예단하여 못박지 말 것이며, 학생들이 원하는 형태의 조직·기구를 구성할 여지를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아울러 자유로운 ‘구성’과 ‘운영’의 구체적 의미에 대해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해 관련 설문조사는 학생, 학부모, 교사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설문 1번) 학생회 구성 및 운영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응답은 교사 22.8%, 학부모 16.7%인데 비해 학생은 10.7%만이 그렇다고 답하고 있다. 이 차이도 의미가 있지만 학생의 90%에 가까운 학생들에게 학생회 활동 자체가 별 의미없는 존재이거나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학생자치활동의 현주소를 읽기에 충분하다. 아울러 중·고등학교 중 25.6%나 되는 학교가 학생회식이 아예 없으며, 제대로 활동되는 학교가 17.2%(교사설문 2번)밖에 안 된다는 사실과 응답 역시 역악한 학생자치활동의 현실을 보여 준다.

**제9조(학생회 구성 및 운영)** ① 학생은 자율적으로 학생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권리 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회 및 자치활동 예산으로 학교운영비의 2% 이상을 책정하고, 그 자율적인 운영과 집행을 보장한다.

③ 학교의 학생지도위원회 등 학생자치활동지도기구는 학생의 자문이나 요청이 있을 시 도와줄 수 있으며, 학교는 학생회 결정이나 자치활동의 결과를 존중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④ 학교는 학생들의 원활한 자치활동이 가능하도록 학생회실 등의 공간을 제공해야 하며, 필요한 집기나 시설·설비를 확보해야 한다.

\* 8조를 구체화 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학생회 구성의 자율성과 자율적 운영을 위한 예산, 시설·설비 등에 관한 규정이다. 특히 ③항은 학생지도위원회 혹은 자문위원회라는 이름으로 학생회를 실질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자율적 학생회 활동을 위축시키는 현실에서

학생회의 자율성을 신장시키고자 '학생의 요청이 있을 시' 도와줄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제10조(피선거권의 제한)** 학생의 각종 선거권·피선거권은 제한할 수 없다. 단, 징계로 인한 피선거권 제한은 최소한의 범위로 할 수 있다.

\* 주안점은 교과 성적으로 학생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을 막자는 의도이다. 피선거권은 징계로 인한 사유 외에는 제한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징계가 사유가 되더라도 최소화해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을 둘으로써 피선거권을 학교 편의적으로 제약하는 폐단을 줄이고자 하였다.

**제11조(동아리 조직 및 계발활동)** ① 학생은 희망하는 동아리 조직이나 계발활동을 제한 당하지 않는다.

② 학교는 동아리 및 계발활동을 위해 유휴 시설의 우선 배정, 예산 수립, 필요한 외부 전문가나 강사 초빙 등 학생의 요구를 존중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적극 지원한다.

\* 현행 입시 중심의 교육현실에서 학생들의 취미·특기·개성을 살린 동아리 활동이나 라이 활동이 설 자리가 없다. 이런 현상은 고등학교, 인문계로 갈수록 심하는데, 학교의 적극적 지원활동을 명시하였다.

**제12조(학교운영에 관한 권리)** ① 학생대표는 부산광역시공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회의 공개원칙에 의거, 학교운영위원회 참관을 보장되며, 필요시 정해진 절차에 의거 발언할 수 있다.

② 학교는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교외 활동과 교복, 앨범, 체육복 등 학생용품의 내용과 선정에 대하여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발언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학생은 교육의 중요한 주체이면서 학교 운영에서는 철저히 소외되어 있다. 신지어 학생 혹은 학부모가 직접 경비 부담을 하는 수학여행이나 학생용품 구입 과정조차 알 수가 없거나 학교에서 알려주는 부분만 알 수 있을 뿐이다. 학교운영위원회가 공개 원칙의 적용을 받는다면 관련 당사자인 학생들에게 공개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② 항에서는 학생들의 경비 부담으로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학생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발언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학생설문 5번 72.8%, 학부모설문 6번

77.1%, 교사설문 9번 53.0%)인 설문 결과로 머루어 발언할 수 있는 범위의 확대에 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동시에 현재의 학교운영위원회가 학생의 경비 부담과 직결된 안건조차 학생들의 의견 반영이 된다는 응답이 낮은 현실(학부모 설문 5번 29.3%, 학생설문 4번 21.8%, 교사설문 7번 11.6%)은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는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 예로써, 그만큼 학교 운영에 학생들의 의견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 제4장 문화 및 복지에 관한 권리

**제13조(학생문화 활동)** 학생은 자유로운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 학생의 문화활동 권리에 관한 포괄적 규정이다. 정보화 시대 창의적 인간 육성을 위해 문학·예술은 필수적 요건이다. 문학적 활동은 주도적 활동과 다양한 사고의 보고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학교는 문학적 분야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학생들의 자발적 문화활동 지원이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교육이라는 점에서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다.

**제14조(문화 프로그램의 개발·운용)** 학교는 학생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교양교육, 초청강연, 공연, 전시 등 각종 문화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여야 한다.

\* 학생 문화활동 지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실천을 유도하려 하였다.

**제15조(학예제)** 학예제는 학생회 주도로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학생 문화활동의 꽃은 학예제이다. 학예제는 학생들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하고 준비할 때 본래의 의미가 살아난다. 이 부분에 대한 인식 역시 긍정적이지 못한데, 학생의 22%(설문 3번), 학부모의 33.9%(설문 3번), 교사의 18.6%(설문 6번)만이 학예제가 학생회 자율에 의해 진행된다고 응답하였다. 학부모의 정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현상이 두드러지는데, 과정이 생략된 결과만을 접하기 쉬운 학부모의 여건이 반영된 듯하다.

학예제의 학생 자율권과 학교의 자의에 의해 학예제가 열리지 못하거나 격년제로 열리는 학교들에 대한 문제 제기이기도 하다.

**제16조(학생 복지)** ① 학생은 학교에서 성별, 성적, 신체조건, 경제적여건 등과 관계 없이 최선의 복지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청은 학교에 학생복지를 담당할 사회복지사 등 복지전문가를 배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 학생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선언적 규정과 아울러 실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의 배치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사회복지사 보다 학교상담사의 편의성이 제기되기도 하고, 예산의 문제 등을 고려해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제17조(복지 및 편의 시설)** ① 학교는 다음 각 호의 학생용 시설·설비 및 편의를 위한 물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실내 휴게시설
2. 정수기
3. 개인사물함
4. 개의실
5. 휴지 등 편의물품

② 교육청은 학교 신설시 ①항의 규정된 시설·설비를 해야 한다.

**제18조(학생의 날)** 학교는 11월 3일 학생의 날 학생회 자율로 다양한 행사나 집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제5장 신체와 노동의 자유에 관한 권리

**제19조(체벌 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어떤 경우에도 체벌 받지 아니한다. 이 경우 체벌이란 신체나 도구를 이용한 타격뿐 아니라 신체적 고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② 학교는 임의 삭발 등 학생의 신체를 해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 학생의 체벌은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의하면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하는 한편, 동법 시행령 제31조 7항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을 제한하는 취지로 적극 해석하면 조례에 체벌 금지 를 규정한다고 해서 법정신을 해손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고, 위낙 천예한 관습 사이기에 보다 신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않도적으로 엄격한 기준에 따른다는 전제하에 체벌을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다(학생설문 7번 62.4% 학, 학부모설문 7번 74.4%, 교사설문 11번 78.1%) 주목할 만한 사실은 현재 행해지고 있는 학생체벌의 심각성에 대한 의식은 '매우 심각하다'와 '어느 정도 심각하다'를 합해 학생 41.9%(설문 8번), 학부모 35.5%(설문 8번), 교사 13.0%(설문 12번)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체벌을 행하는 쪽과 당하는 쪽의 입장 차이를 엿볼 수 있다. 결국 체벌에 관해서 학생·학부모는 심각성도 어느 정도 인식하면서 엄격한 기준을 전제로 허용하는 것을 다수가 선호하는 것은 체벌에 관한 인식이 변화해 가는 과정의 혼란스러움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사의 경우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이 점은 논의의 시사점을 던져 준다.

**제20조(부당한 노동을 하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교육적 목적 여부와 상관없이 연령에 비해 과다한 노동을 강요받지 않는다.

② 학생은 교육 목적과 관련 없는 학교와 교사의 임의적 판단에 의한 노동을 강요받지 않는다.

③ 학생은 학교의 교직원 전용 시설 등 학생이 사용하지 않는 시설·공간에 대해 청소, 관리 등의 노동을 하지 않을 권리다.

\* 교육이라는 명명하에 행해지는 또 하나의 인권 침해는 교육 목적이 모호하거나 정도가 지나친 노동 혹은 잡무를 학생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특히 학생들이 사용하지 않는 공간에 대한 청소나 관리가 과연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학의적 의견이 많다. 학생들의 청소량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적절하다'가 과반수를 넘고 있는데(학생설문 9번 53.4%, 학부모설문 9번 53.9%, 교사설문 13번 56.7%)

비해, 학생이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학생들이 청소하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 응답이 오히려 과반수를 넘거나 과반수에 육박한다(학생설문 10번 60.4%, 학부모설문 10번 47.3%, 교사설문 14번 58.1%). 이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공간에 대한 청소는 교육훈련과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공간에 대한 청소가 교육훈련을 거두기 힘들다는 반증이라면, 학생들이 청소하지 않는 다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반영하였다.

## 제6장 사생활을 누릴 권리

**제21조(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학생은 가족, 가정, 교우관계 등의 사생활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그 비밀은 보호해야 한다.

**제22조(정보에 관한 권리)** ① 학교나 교사는 학생의 개인 정보의 수집이나 처리·보관에 있어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하여야 하며, 본인 혹은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② 학생 개인의 정보는 수집 당시에 공지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학생의 부모 혹은 보호자는 자녀의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으며, 부정 확한 내용이나 잘못 기입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내용, 학생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해서는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천예하면서 갈수록 신각해지는 정보인권의 문제를 다루고자 했다. 학생의 정보인지라도 그 수집과 활용, 공개 등은 본인의 동의나 수집 목적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물론 이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지만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권리가 무시되는 현실에서 주의 한기를 위해서도 필요한 규정으로 여겼고, 잘못된 정보는 물론 학교 입의로 수집한 정보에 대해서는 삭제를 요구할 권리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기했다.

**제23조(개인의 물품 관할 권리)** 학교와 교사는 집단적 혹은 학생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소지품 검사 및 몰수를 할 수 없으며,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의 사적 기록물을 열람 할 수 없다. 단, 초등학교에서 올바른 생활습관 교육을 위한 일기장 검사나 용의검사 등의 교육적 목적이 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 학생의 소지품 검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학생과 교사 사이에 상당한 인식의 차

이를 보여주고 있다. 교사는(설문 15번) '문제된 것이 없다'에 3.7%만이 응답하였고 학생은(설문 11번) 15.3%가 응답하여 문제 의식은 교사가 높은 반면, 교사는 '문제는 있지만 불가피하다'에 무려 63.3%가 응답한 반면 학생은 23.0%가 응답하여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다. 학생동의가 없거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소지품검사를 반대하는 응답은 학생 55.6%, 교사 30.3%로, 견사를 실시하는 입장과 달하는 입장의 차이를 잘 드러내고 있다. 문제의식과 현실수용에 상반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사생활이 감시당하는 입장은 수치심 등으로 신각하지만 감시하는 쪽은 신각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교육적 훈련보다 역기능이 우려되므로 필요한 항목으로 판단하였다.

**제24조(정보·통신의 권리)** 학생의 정보·통신에 관한 권리는 수업이나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호되어야 한다.

\* 핵심은 학생들의 휴대용전화기 사용에 관한 것으로, 역시 천예하면서도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다. 그러나 논란의 대상인 휴대용전화기에 대한 개념이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다르다는 점이 전제되지 않으면 의미없는 논란으로 전락하기 쉽다. 교사나 학부모들에게 휴대폰은 통화기기이지만 학생들에게는 통화기기이면서 정보학적 통로이며, 다이어리, 게임기, 카메라 심지어 과거 기성세대들이 친구들과 주고 받던 쪽지, 편지의 기능까지 대신하는 다기능 기기이다. 따라서 현재 학생들은 전화기 없는 삶을 상상하기 힘들며, 이러한 인식은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잘 나타나 있다. '전면 휴대금지'에 응답율을 보면 학부모 7.7%(설문 12번), 교사 5.6%(설문 16번)인데 비해 학생은 1.4%(설문 12번)에 불과하다. 교내 사용 금지에 대해서도 학부모 24.1%, 교사 32.1%에 비해 학생은 3.1%로 더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학부모나 교사가 자신들의 틀에 맞추어 학생들을 이해하려고만 한다면 결국 학생에게 강제하고 무시하고 교육적 훈련을 거두기는 힘들다. 말 그대로 통화할 권리가 아니라 정보·통신에 관한 권리라는 점에서 올바른 사용지도가 관건이 될 것이다 여기고, 학부모와 교사의 인식 변화를 견인하려는 의도가 들어 있다.

**제25조(모욕당하지 않을 권리)** ① 교사는 순화된 언어를 사용해야 하며, 학생의 인권이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언사를 해서는 안 된다.

② 학교와 교사는 학생에게 타인의 사생활이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 학교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에 대해 많은 학생·학부모는 신체적 구타보다 오히려 폭언·모욕적 발언을 꼽고 있다. 학부모는 신체적 구타 32.7%, 폭언·모욕적 발언 50.9%의 응답율(설문 18번, 복수 응답)을 보였고, 학생은 신체적 구타 19.3%, 폭언·모욕적 발언 36.8%의 응답율(설문 15번)을 보여 언어에 의한 인권침해를 상당히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신체적 체벌보다 순화되지 않거나 폭력적 언어에 의한 인권침해가 보다 빈번하게 행해지지만, 심각한 문제로 표면화되지 않아 일상화의 정도가 심한 현상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체벌이 육체적 고통의 흐려가 있다면 언어는 심리적 고통의 흐려가 있다는 면에서 학생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반드시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또한 학교에서 흔히 학생들의 진술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학생의 의도와 관계없이 친구의 사생활이나 비밀을 누설시키기 하는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범죄자를 심문하는 경찰이라면 몰라도 교육의 장인 학교에서는 배제되어야 할 이제 짓재이다. 더욱이 학교나 교사들은 이러한 지도 방법이 훈련적이라는 생각은 쉽게 해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기 쉬울 뿐더러, 학생 상호간에 불신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배척되어야 할 만행이다.

## 제7장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

**제26조(의사 표현의 자유)** 학생은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자유를 가지며, 부당하고 임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27조(학내언론)** 학교는 학생신문이나 방송, 교지 등 학생 언론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 학교내 의사표현의 자유는 학생이 자유로이 발언할 수 있는 매체가 핵심이다. 즉, 학생이 주체가 되는 신문이나 방송 등을 지원하고 활성화시킴으로서, 소극적이 아닌 적극적인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이다.

**제28조(홈페이지의 익명성 보장)** 학교와 교육청은 홈페이지 운영에서 학생의 신분

을 노출시키지 않고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학생이 자신의 의사를 겸연당하지 않고 표출할 권리는 자유롭게 발언할 권리에 더하여,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서 말할 권리도 포함된다. 이는 학생이 학교에서 교사나 학교에 대해 절대적 약자이기 때문이다. 홈페이지 게시판의 실명제 운영이 장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본다면 약자의 선택권을 강자가 행사하는 꼴이다. 설문조사 결과는 이전을 극명하게 드러내 준다. 실명제와 비실명제에 대한 선호도에서 학생(설문 13번 실명 37.6%, 익명 42.4%)과 학부모(설문 13번 실명 37.5%, 익명 42.6%)는 거의 동일한 응답율을 나타내는데 비해, 교사는 실명 71.2%, 익명 18.6%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학생과 학부모의 응답율이 비슷한 것은 학교나 교사에 대해 약자라는 현실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교사의 경우 실명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상대적 강자로서 실명제를 택함으로써 문제의 소지를 줄이자는 의도가 개입된 것으로 보인다. 인권은 강자에 대한 약자의 권리라는 속성을 생각할 때, 홈페이지 익명제 운영 역시 필요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제29조(집회·결사의 권리)** 학생의 교내 집회 및 결사는 학사일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 학생의 집회나 결사는 학교 앤팎을 구분하지 않고 금기시 된다. 집회나 하면 곧 데모를 떠올리고 결사는 일진회로 이어지는 의식의 한계도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집회·결사는 인간이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한 편수적으로 하게 되는 행위이다. 학생의 학교생활에서도 뜻맞는 친구나 선후배간에 교육하고 모임을 만들고 학습을 하는 행위가 일일이 학교의 허락을 맡을 성질은 아니다. 오히려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적극 권장되고 장려되어야 하는 것이 집회와 결사라는 것이 옳을 것이다.

**제30조(교외활동에 참여할 권리)** 학생은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한 교외 문화행사 및 사회활동의 참여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 학생도 학교 밖에서 사적인 권리를 누릴 자유는 당연한 것이다. 학교밖의 사적인 자유 영역에서 사적적으로 비난받거나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한 선택은 학생 개인의 몫이다. 따라서 학교는 학교 밖에서 학생의 문화행사나 사회활동의 참여를 규제해서는 안 된다. 현실과 거리가 크긴 하지만, 인식의 전환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 제8장 적법한 절차를 누릴 권리

**제31조(적법절차의 권리)** 학생은 학교의 제 규정이나 징계 등을 통한 권리의 제한이나 불이익을 당할 경우 반드시 적법한 절차가 보장된다.

- 제32조(학칙 및 제 규정)** ① 학교의 제 규정은 학생의 사생활 및 인권을 침해할 수 없으며, 이 조례에 의해 보장된 학생의 제 권리를 관련 규정에 명시하여야 한다. 단, 교육적 필요에 의해 그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는 최소화 하되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한다.  
② 학생 생활 관련 규정은 학생 스스로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으면서도 학생 개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  
③ ②항의 취지 하에 규정 제·개정 시 학생 의견 수렴 절차를 제도화하고, 학생자치 기구의 개정 발의권을 보장해야 한다.  
④ 학교의 제 규정은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서술되어야 하고, 또한 학생을 잠재적 징계대상자(비행행위자)로 간주하는 표현을 쓸 수 없다.

\* 학칙 및 학생 생활 관련 규정은 법률이나 조례를 넘어서 수 없다. 그러나 현재 거의 모든 학교의 규정들은 교육기본법이나 초중등교육법, 헌법의 학생인권 존중 조항을 어기고 있으며, 이 전은 교육부의 학교생활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서를 보면 자명해진다. 아울러 교육적 필요에 의해 학생의 권리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최소화 하는 한편,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부당한 권리 제한의 여지를 줄이자는 것이다. 학생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 규정에 학생의 의견 반영이 바람직한 것도 물론이다.

- 제33조(절차적 적법절차)** ① 학생은 헌법 제12조 1항에 의거 적법절차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할 수 없다.  
② 학생의 징계는 공정한 심의기구 구성을 통한 심의, 징계 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진술기회 부여, 불복에 따른 재심 요구권을 반드시 인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권리에 대한 정보를 학생 당사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전달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 헌법 제12조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自由不受侵害の権利)를 규정한 것으로, 절차적 적법절

차를 규정하고 있다. 학생 역시 징계나 처벌시 절차적 적법절차를 보장 받을 권리가 있어야 하며, 학생당사자의 자기 방어를 위한 절차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34조(실체적 적법절차)** 징계의 기준과 사유는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며, 학생을 징계에 회부할 때는 그 사유가 징계규정에 의거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 절차적 적법절차가 미비하여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절차적 적법절차의 보장이 곧 실체적 적법절차의 보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학생의 징계는 사법상의 원리와 마찬가지로 징계의 기준과 사유에 비추어 학생의 위반 행위 성립 여부, 징계 양성과 행위의 경증 등 실체적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징계는 대상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학교의 징계는 온정주의에 의해 학생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측면도 있지만, 실체적 진실보다 징계권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결과적으로 신각한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자는 것이다.  
교사 설문조사에 의하면, ‘징계위원회 등 심의기구 구성이 공정하고 합리적’ 53.0%(설문 18번-1), ‘학생에게 사전 진술기회 부여’ 21.4%(설문 18-2), ‘불복에 따른 재심 요구권’ 11.2%(설문 18-3), ‘징계 사유에 대한 충분한 사전 통지’ 65.6%(설문 18-4), ‘제반 절차에 대한 충분한 전달과 설명’ 55.8%(설문 18-5)의 응답율을 보이고 있다. 사전 진술기회 부여의 문제나 재심요구권 등 신각한 문제를 지닌 항목이 눈에 띈다. 또 학교 교사를 상대로 ‘학교의 징계 규정이나 절차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잘 모른다’고 답한 사람이 25.1%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에서 학생징계가 합리적 기준에 의하기보다는 그때그때의 판단에 의존하거나, 기준이 있다 할지라도 결합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제9장 학생인권 보호 기구 설치 및 인권교육·연수

**제35조(학교 인권보호기구 설치)** ① 학교는 학생의 인권 보호와 그 침해의 예방, 치유를 위해 학생, 학부모, 교사로 구성되는 교내 학생인권보호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①항의 기구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6조(교육청의 인권보호기구 설치)** 교육청은 학생의 인권 보호와 그 침해를 예방, 치유하기 위해 교육주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학생인권보호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그 역할과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성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중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교육위원회 1~2인,

교사 2~3인,

학부모 2~3인,

법률전문가 2인,

인권전문가 2인

기타 시민단체 대표 등 15인 내외로 한다.

2. 역할 : 1) 각종 정책이나 시책, 교육과정상의 인권보호 및 침해 예방 활동

2) 학생 인권을 보호·신장하는 정책 연구·개발 및 건의

3) 학생 인권 침해 사례나 분쟁에 대한 조정

4) 본 조례안 및 각종 학생인권관련 규정의 해석

5) 기타 학생 인권 보호 및 신장과 관련한 활동

3. 기타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학생인권보호기구의 설치에 대해 학부모와 교사는 상이한 인식을 나타낸다. 교사는 학교내 설치에 14.4%(설문 19번), 교육청에 설치에 44.2%, 학교와 교육청 모두 설치에 18.1%의 응답율을 보인 반면, 학부모는 학교내 설치에 무려 36%(설문 14번), 교육청에 설치는 10.7%만이 응답하고 있고, 학교와 시교육청 모두 설치에 41.1%가 응답하고 있다. 결국 학부모는 학생 인권침해의 현장이 학교라고 보고 있는 반면, 교사는 학교의 학생 인권침해에 대해 신각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보호의 의무를 교육청에 전가하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를 감안했을 때, 결국 학교나 교육청 모두에 학생인권보호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하였다.

**제37조(학교내 인권교육·연수)** 학교는 학기당 1시간 이상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학생교육과 교사 연수를 연간 계획에 의해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학생교육의 내용은 학생회와 사전 협의한다.

**제38조(교육청 인권 연수 및 지원)** 교육청은 모든 직무연수 시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연수를 1시간 이상 편성하여야 하며, 학교의 학생교육과 교사연수를 위한 자료 개발 및 지원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교사의 21.4%가 '매우 필요하다', 60.5%가 '대체로 필요하다'고 응답하고(설문 20), 학부모의 30.7%가 '매우 필요하다', 55.1%가 '대체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정도 차이는 다소 있지만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인권은 존중받은 사람이 타인의 인권을 존중할 줄 알뿐더러, 인권에 대해서 배워야하는 존중받을 수 있고 존중해 줄 수 있다. 학생인권상황의 개선을 위해서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고, 따라서 교육청과 학교의 인권 교육에 대한 책무와 구체적 방안을 명기하였다.

이 전에 대해서 교사의 78.1%가 교사 양성과정이나 교사 인용 후 학생 인권과 관련된 교육을 전혀 받은 바 없다는 응답(설문 24번)은 학교 인권이 현실을 대변해 준다.

## 부 칙

**제1조** 이 조례는 2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교의 장은 사설교육기관이나 수련원 등에 학생을 위탁하여 교육할 시 이 조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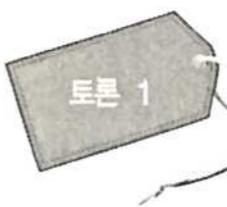
\* 학생들이 학교가 아닌 사설교육기관 위탁 교육시 학교와 동일한 정도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공간과 교육자에 상관없이 교육의 전 과정에서 학생 인권이 보호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려 하였다.

**제3조** 학교는 이 조례안에 맞추어 제 규정을 200\*년 7월까지 재·개정 하여야 한다.

\* 학교의 인권현실에 대해 학부모, 학생의 인식과 교사의 인식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학교에서 학생 인권이 보호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학생의 25.4%(설문 14번) '매우 그렇다' 1.6%, '대체로 그렇다' 23.8%)가, 달했고 학부모는 36.9%(설문 16번) '매우

그렇다' 2.4%, '대체로 그렇다' 34.5%)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반면 교사는 65.1%(설문 21번 '매우 그렇다' 4.2%, '대체로 그렇다' 60.9%)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즉,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의 인권상황을 그의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데 비해 교사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생·학부모나 교사 양자 중 어느 누가 학교 상황을 잘 못 알고 있거나, 양자의 입장이 다르다 보니 인식이 각각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인권을 침해하는 중요한 측인 교사와 친해당하는 학생 간 인식의 차이는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학생이 인권침해가 심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사는 인권침해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 차이야말로 인권조례가 필요한 증거일 수 있다.

\*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조례나 규정의 제정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학부모의 83.9%(설문 17번 '매우 그렇다' 25.3%, '대체로 그렇다' 58.6%)가, 교사의 69.7% (설문 23번 '매우 그렇다' 11.6%, '대체로 그렇다' 58.1%)가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물론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겠지만, 학생 인권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높은 인식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학생 인권 신장을 위한 여러 가지 모색

강 명 숙 (국가인권위원회)



## I. 「학생의 ‘삶’과 인권」을 읽고

### 1. 학생인권 개념 정립의 문제

: 아동·청소년의 인권과 학생인권, 학교라는 삶의 공간에서의 인권과 사회적 약자로서의 집단 특성에 근거한 인권, 교사인권과의 관계 등 분명히 할 필요 있음

### 2. 학교라는 공간에서의 삶의 특성

: 학교라는 근대 공교육 공간의 의의와 한계에 대한 구분 필요, 한계 위주의 인식이 인권 문제에 제한적 접근할 우려 있음. 특히 학생인권 보장에서 교사의 위치 설정 어려움

### 3. 학생인권의 내용

: 학생인권의 영역에서 사회적 지위권 중심으로 우선 보장되어야 할 권리의 종류 (교육받을 권리, 표현의 권리, 사생활보호권리, 적법절차보장권리)를 선정한 이유 제시 필요, 권리 영역의 축소 우려

### 4. 침해요인

: 교육시민사회의 미발달, 인권개념의 미발달(봉건적 사고), 경쟁구조, 권위주의적 교육문화 등 거시적 접근이 놓치기 쉬운 것들

### 5. 개선노력의 방향

: 기구와 법 정비, 학교내외의 분쟁 조정·감시 기구, 인권교육, 참여권의 보장, 민주적 규율 제정 등의 실현가능성 문제와 실현의 노력은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 II. 학생인권에 대한 국가기구의 인식과 정책 방향

### 1. 학생인권을 위한 국가기구의 역할 분담

: 학교 공동체와 교육행정기구와 국가인권기구

- 1기 국가인권위원회가 주력한 분야(심각성, 긴급성, 사회적 의의)
- 영역별 접근의 한계
- 교육권, 인권, 인권교육의 중첩

## 2. 학생인권의 신장 위한 접근

- : 진정  
다양한 진정 내용(체벌, 종교자유, 자치활동, 0교시 수업 등, 비인격적 대우)
- : 실태조사  
교사인권인식, 이주노동자 자녀·장애인의 교육상황
- : 권고  
학교생활규정안, 반인권적 교육내용 수정, 정보인권
- : 협의  
인권교육과정 운영, 교원 인권교육 연수 기획
- : 구제

## 3. 정책 방향

- : 국제적 동향과 국내 상황
  - 국제 NGO 중심으로, 2차 인권교육10년계획의 필요성 제기, WPHRE(World Programme for Human Rights Education) 초안 제출 중
  - 1단계로 학교인권교육에 초점 둠(2005-2007)
- : 인권교육 정책 수립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작성 중
- : 학교 인권교육의 강화(교육정책과 실행계획, 교육여건과 문화 등의 학습환경, 교육 내용, 교육관계자의 교육과 전문성)

## 4. 학생인권의 현실과 신장의 노력 방향

- : 권리주체로서의 인식과 자기결정권·참여권 보장
- : 규범적, 상징적 권리 천명을 실천하는 교육 공동체의 운동

## 참고자료 1(상담사례)

**사례31**

성적을 이유로 한 학급 회장 입후보 제한		
상담번호	상담날짜	상담시간
상담번호 03-전상-4000200	상담날짜 2003.03.31	상담시간 30분
상담요지		
<p>내담자가 재직하고 있는 인천 소재 ○○중학교의 '학교생활규정'에 의하면 성적이 40% 이내에 속하는 학생만 회장 선거의 입후보자가 될 수 있다. 얼마 전 성적이 40% 이내에 속하지 않는 학생이 회장으로 선출되었는데, '학교생활규정' 때문에 그 학생을 회장으로 임명하지 못하고 있다.</p> <p>내담자는 학생들의 추천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선출된 학급 회장을 성적을 이유로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차별이므로 위원회가 본 사안을 조사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p>		
답변요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원회법 제3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병력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임을 안내하였다. 이와 같은 차별 이유 중 성적을 이유로 한 차별을 무엇으로 볼 지 위원회의 판단을 있어야 하며, 이에 따라 조사가능 여부가 결정됨을 안내하였다.</li> <li>2. 내담자는 교육청에 이의신청한 후 필요하다면 위원회에 재상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li> </ol>		

1999년 서울시 교육청은 학급 반장이란 용어를 회장으로 바꾸고, 가능하면 다양한 학생들이 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비민주적 요소에 의해 회장 입후보자를 제한하지 않을 것을 권장한 바 있다.<sup>259)</sup>

259) 『중아일보』, 1999.02.22일자

학생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은 '학교생활규정'에 포함되어 있는데, 현행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은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생활규정은 임의 규정으로 현재 성적에 의해 회장 입후보자를 제한하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다.

한편, 위원회는 2002년 6월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학교생활규정(안)'을 검토한 뒤 학생인권의 악화 또는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관련안에 대한 의견표명을 한 바 있다.

## 관련규정

###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도·감독기관(국립학교인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공·사립학교인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찰청"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사항 및 제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유치원을 제외한다)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10.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 ■ 학생대표선출에 관한 규정의 문제점<sup>260)</sup>

### 1. 임원이 될 수 있는 학생의 조건

#### 임원이 될 수 있는 학생의 조건

	품행단정	성적우수	교사추천	장계경력자 제한	전체
학교수	84	34	30	86	99
백분율(%)	84.85	34.34	30.30	86.87	100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의 2004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품행 단정의 기준은 개인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어 이를 학생대표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삼는 것은 어른들의 잣대에 맞추어 학생대표의 조건이 결정될 위험을 안고 있다. 또한 성적을 제한하는 것은 공부를 못 하는 학생은 다른 일도 잘 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학생대표는 학생들을 위해 일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학교 당국이 학생의 조건으로 능력을 가늠하는 것은 투표를 하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 2. 기타 문제 조항

- ① 후보자 등록 구비서류에 담임추천서 및 생활지도 각서가 포함되어 있다.
- ② 학생대표 선출 후에 학교 당국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 ③ 득표수가 동일할 때는 학교 성적 및 최고 연장자 순으로 결정한다.
- ④ 2차 투표에서도 동수일 때는 학교장이 지명한다.
- ⑤ 합동연설회의 연설문 내용은 합동연설회 2일 전까지 학생지도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260) 구논회, 「학교생활규정을 통해 본 학생인권의 현주소」, p16-18

## ◆ 인권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학교생활규정(안) 관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 26일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생활규정(안)을 검토한 뒤, “급변하는 사회에서 학칙개정을 유도하려고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지만, 교육부의 예시안이 학생인권의 악화 또는 침해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체벌금지, 초중등교육법 개정, 학교 내 인권상담기구 설치, 정치활동 금지규정 삭제 등을 권고하였다.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와 관련해 현행 교육부 예시안은 ‘학생회 회원(학생)은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도 학교운영의 책임 있는 한 주체이므로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시할 수 없음’은 ‘학교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아울러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개정을 권고하였다.

현행 교육부 예시안은 학생의 정치활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인간의 권리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가안보와 공공질서 도덕 등을 침해하지 않는 한 제한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표명한 뒤, “학생들에게도 민주적 방식을 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학교는 학생들에게 인권·평화·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단체 활동 참여를 장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현행법은 만 20세 이상의 성인에 한해서 참정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정당법은 당원의 자격을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생활규정에서 정치활동 금지조항을 삭제하더라도 학생은 정당원이 될 수 없다.

이밖에 국가인권위는 학교생활규정의 목적에 학생인권 보장을 추가할 것,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할 것, 장애학생들이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교와 교사의 의무 및 통합교육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 도시와 농촌 및 초등학교와 실업고등학교의 생활규정을 실정에 맞게 달리 규정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02.09.10.)

## “성적 나쁘다, 반장 당선 무효화”

충남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투표로 뽑은 반장을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새로 뽑기로 해 말썽을 빚고 있다.

15일 이 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에 따르면 학교측은 11일 3학년 반장 김모양(15)이 성적이 상위 50% 이내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선거를 실기하기로 했다는 것. 김양이 학생들의 투표로 반장으로 뽑힌 지 5일만의 일이다.

김양의 아버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반장으로 선출됐다면 좋아하던 딸이 이날 울먹이며 학교에서 돌아와 ‘담임 선생님이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너는 성적이 좋지 않아 임명장을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양의 담임 최모 교사는 “반장으로 임명하는데 교칙이 문제가 돼 ‘네 성적이 어느 정도냐’고 물은 적은 있다”며 “최근 부임해 학교 교칙이나 학생들에 대해 잘 몰라서 빚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이 학교 교칙은 ‘반장으로 선출되려면 성적이 가급적 상위 50% 이내에 들어야 한다’는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교측이 반장의 요건으로 리더십 보다는 성적을 강조해 ‘성적지상주의’를 부추기고 있을 뿐 아니라 학생들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한 반장을 당선 무효화하는 일방통행식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동아일보 2002.03.15일자)

토론 2

## **학생의 인권 존중은 희망을 나누어 갖는 첫걸음이다**

이 미 식 (부산교육대학교 교수)



## I. 시작하며

학생의 삶과 인권: 현실과 개선조건의 이수광 교수의 논문이나 학생인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공동체에서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함을 초·중등학교가 당면하고 있는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과 함께 구체적인 대안으로 조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다음의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첫째, 학생인권이 보호·존중되어야 하는 근거는 학교공동체의 반인권적 실태에 대한 진단에서 비롯된다. 학교공동체내에서 학생들이 삶은 비정상적인 것을 강요하고, 학생들이 누려야 할 학생으로서 인권 즉 자유권, 행복권, 사회적 지위권(교육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를 보호받을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적법절차를 보장받을 권리 등)등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학생 인권규정에 대한 내용을 법제화, 학생 인권보호 기구를 설치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외적감시체계를 도입할 것과 함께 학교의 내적 장치의 마련으로서 참여적 의사 소통망의 구축 민주적 학교교육, 학생 옴부즈맨 제도, 체험적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그리고 적법한 절차의 보장 및 심판기구의 공정한 운영, 학생인권 보호 지침서 발간·보급, 교권지침서의 발간 등이 노력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

셋째, 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학생인권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 공감하면서 다음의 몇 가지를 더해 보고자 한다.

### 1. 학교공동에서 학생 인권을 존중·보호하는 것은 학생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이다.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해 볼